

# INVENTION & PATENT

2012 September

09

[Focus]

미국 특허 제도의 혁명

삼성-애플

美 특허 본안 소송, 그 후



INVENTION & PATENT \_ Vol. 434





# 지식재산캠퍼스 9월 교육일정 안내

## 교육일정



###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2기

일정 : 9.12(수)~9.14(금)

- 기술가치평가와 라이선싱 계약을 통한 기술 활용전략 습득과정

#### ▶ 환급 및 지원

55만원(48만원)

#### ▶ 환급 및 지원

노동부 약15% 환급  
중소기업대상 특허청 80% 지원



### 지식재산 번역 (한-영)

일정 : 9.20(목)~9.21(금)

- 지식재산번역의 이해 및 한-영 지식재산번역 기초 능력 함양

#### ▶ 환급 및 지원

35만원

#### ▶ 환급 및 지원

중소기업 : 특허청 80% 지원  
중소기업 외 : 특허청 60% 지원



### 연구노트와 발명신고서 작성법

일정 : 9.25(화)

- R&D 연구원들을 위한 효과적인 연구노트 작성법과 권리범위 최대화를 위한 발명신고서 작성법!

#### ▶ 환급 및 지원

18만원(15만원)

#### ▶ 환급 및 지원

중소기업대상 특허청 80% 지원



###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일정 : 9.26(수)~9.28(금)

- 특허명세서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통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등록 후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명세서 작성법 습득

#### ▶ 환급 및 지원

55만원(48만원)

#### ▶ 환급 및 지원

노동부 약15% 환급  
중소기업대상 특허청 80%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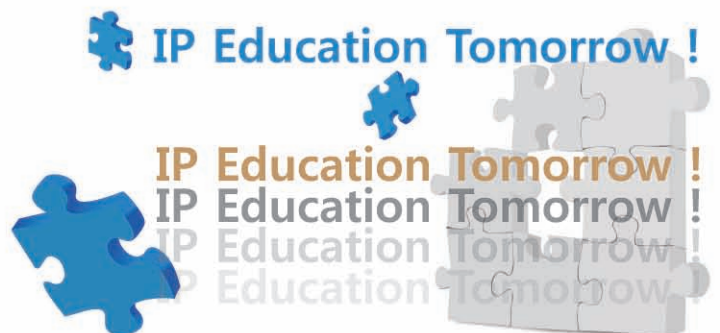
## 수강신청 방법



## 교육비 환급방법

<b>노동부</b> 노동부 교육비 환급 대상 : 고용보험가입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약20% 대기업 약15% 환급 예상
<b>특허청</b> 특허청 교육비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교육비의 80% 환급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기관, 개인등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환급대상 제외)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합인 및 노동부 중복 환급 적용불가



자세한 사항은 www.ipcampu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2 독일 국제 아이디어 · 발명 · 신제품 전시회 모집안내 iENA2012 (International Trade Fair Exhibition “Ideas-Inventions-New Products”)

한국발명진흥회는 국내 발명품의 우수성을 유럽 시장에 홍보하고 유럽 지역 수출 및 라이선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독일 국제 아이디어 · 발명 · 신제품 전시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우수한 발명 · 신제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개 요

- 기 간 : 2012. 11. 1(목) - 11. 4(일) [4일간]
- 장 소 : 뉘른베르그 무역전시센터 Hall12 (Nuremberg Trade Fair Centre, Hall 12)
- 주 최 : AFAG Messen und Ausstellungen GmbH
- 시 상 : 분야별 금·은·동상, 특별상 시상
- 규 모 : 30개국 750건 (2011)

### ■ 신청안내

- 신청대상 : 국내 · 외에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보유한 자 등  
※ 단, 산업재산권 중 상표권과 신분상 초 · 중 · 고 학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 2012. 9. 19 (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유동환 주임 ☎ 02-3459-2843

### ■ 참가비용

- 직접참가 (전시 및 1인 현지 참가기준) (단위: 천원)

부스 형태	비 용	종 류
4㎡ (2m×2m)	8,600	발명품
6㎡ (3m×2m)	9,500	신제품

- 위탁참가 (1건 위탁전시 기준) (단위: 천원)

부스 형태	비 용	종 류
4㎡ (2m×2m)	5,600	발명품
6㎡ (3m×2m)	6,600	신제품

- 입 금 처 : 신한은행/140-003-806543/한국발명진흥회

# 2012 중국국제발명전시회 출품자 모집요강

## 7th International Exhibition of Inventions, New Techniques and Products

한국발명진흥회는 국내 발명품의 우수성을 유럽 시장에 홍보하고 중화 지역 수출 및 라이선스 기회 확대를 위해 중국 국제발명전시회 참가자를 모집 합니다. 우수한 발명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개 요

- 기 간 : 2012. 11. 9(금) - 11. 12(월) [4일간]
- 장 소 : Kunshan International Expo Centre, Kunshan, China
- 주 최 : 국가과학기술부 MOST, 국가지식산업국 SIPO, 중국발명협회 CAI, 국제발명가협회 연맹 IFIA
- 시 상 : 금·은·동상, 특별상 시상
- 규 모 : 36개국 1,000건 (2008) \*4년마다 개최

### ■ 신청안내

- 신청대상 : 국내·외에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보유한 자 등  
※ 단, 산업재산권 중 상표권과 신분상 초·중·고 학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 2012. 9. 28 (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유동환 주임 ☎ 02-3459-2843

### ■ 참가비용

- 직접참가 (전시 및 1인 현지 참가기준) (단위:천원)

부스 형태	비용
9㎡ (3m×3m)	2,400

- 위탁참가 (1건 위탁전시 기준) (단위:천원)

부스 형태	비용
9㎡ (3m×3m)	1,300

- 입 금 처 : 신한은행/140-003-806543/한국발명진흥회

# Seoul Int'l Invention Fair (SIIF)

## 2012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신청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전 세계 최신 발명품 전시를 통하여 제품 및 기술거래 촉진을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2012 서울국제발명전시회를 개최하오니 우수한 발명·신제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개 요

- 기 간 : 2012. 11. 29(목) - 12. 2(일) [4일간]
- 장 소 : COEX Hall A (舊 태평양홀)
- 주최/주관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 후 원 :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 시 상 : 대상, 준대상, 금·은·동상, 특별상 시상
- 규 모 : 31개국 668건 (2011)

### ■ 신청안내

- 신청대상 : 국내·외에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보유한 자 등
- ※ 단, 산업재산권 중 상표권과 신분상 초·중·고 학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 2012. 10. 16 (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 02-3459-2796, 2843

### ■ 전 시 료 : 1,430,000원/1부스(3m×3m×2.4m) : 부가세 포함가

- 전 시 품 : 신청인 1부스당 3점 이내
- 입 금 처 : 신한은행/140-004-546828/한국발명진흥회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siif.org](http://www.siif.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2 선진 유럽 혁신 기술 및 산업 시찰단

한국발명진흥회는 세계 최첨단 기술 개발 동향 파악, 기술개발 의욕 고취, 다양한 분야의 신상품 개발 및 아이디어를 습득하고 세계시장의 흐름과 정보 수집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2 선진 유럽 혁신 기술 및 산업 시찰단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개 요

- 기 간 : 2012. 10. 29(월) - 11. 4(일) [5박 7일]
- 참가대상 : 특허관련업무종사자, 직무발명자, 기업체부설 연구원, 상품개발·기획업무종사자 등 시찰 희망자
- 세부내용
  - 독일 국제 전시회 참관
  - 유럽 우수기업 탐방 (체코, 독일, 프랑스)
  - 현지 문화 체험 (체코, 독일, 프랑스)

##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2. 10. 5 (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유동환 주임 ☎ 02-3459-2843

## ■ 참가비용 : 5,500,000원 / 1인

-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일급호텔(2인1실)숙박료, 해외여행자보험, 전용차량, 현지가이드비용, 공항이용료, 통역비 등 일체비용 [단, 여권 수수 비용 제외]
- 입금처 : 신한은행/140-003-806543/한국발명진흥회



2012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 미국 특허소송절차 (지방법원, ITC, 연방항소법원)

## US IP Litigation; District Court, ITC and Federal Circuit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해외출원 및 분쟁 등이 예상되는 기업의 특허인력을 대상으로 국제특허업무 능력 및 분쟁역량 향상을 위하여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프로그램 개요

- 교육기간 : 9월 20일(목) ~ 9월 21일(금)
- 교육대상 : 기업 또는 특허법률사무소의 미국특허 관련업무 종사자, 미국 특허출원 및 소송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 교육인원 : 30명 내외 (선착순 마감)
- 교육비 지원 및 할인
-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18층 교육장
- 교육비 : 23만원 (중식제공)

- 중소기업의 경우 교육비의 80%지원 (\*40,000원만 선납부)
- 조기신청자(9월 14일까지)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사의 경우 교육비 50% 할인 (\*110,000원만 선납부)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할인 적용 불가」

### 📌 프로그램 특징

- 미국 특허소송 단계별 절차 및 전략을 이론뿐 아니라 사례 및 실무중심으로 강의운영
- 실무경험이 풍부한 해외 로펌 전문가의 초청강연을 통한 해외 실무경험 공유
- 특허출원 및 소송분야에서 미국 최고 수준의 특허전문 Finnegan & Henderson의 파트너 변호사 초청강의
- 강의는 우리말과 영어를 병행하고, 영어 강의시 한국어로 Q&A 및 요점정리를 통한 내용 이해 도모

### 📌 프로그램 일정

일 정	시 간	교 육 내 용
9/20(목)	09:10~09:30	Reception and Orientation
	09:30~09:40	Overview of the Program
	09:40~10:40	Overview of US Legal System-Hierachy of US Courts
	10:40~11:00	Q/A-Break
	11:00~12:00	Prelitigation Strategy
	12:00~13:20	Lunch
	13:20~14:30	Litigation in the US - Overview of ITC (Part 1)
	14:30~14:50	Q/A-Break
	14:50~16:00	Litigation in the US - Overview of ITC (Part 2)
	16:00~16:20	Q/A
9/21(금)	09:10~09:30	Reception and Orientation
	09:30~10:30	Introduction to US Patent Litigation - District Court Patent Litigation (Part 1)
	10:30~10:50	Q/A-Break
	10:50~12:00	Introduction to US Patent Litigation - District Court Patent Litigation (Part 2)
	12:00~13:20	Lunch
	13:20~14:20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14:20~14:40	Q/A-Break
	14:40~15:50	Trade Secret
	15:50~16:10	Q/A

\*상기 세부교육내용은 교육운영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 주 강사

Charles H. Suh



- Finnegan & Henderson 파트너 변호사
- 주요약력 -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 Virginia Trial Lawyers Association
- 최종학력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J.D

###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12년 8월 23일(목) ~ 9월 19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pid@kipa.org) 또는 FAX(02-3459-2859) 접수  
「신청 후 확인 전화 주시면, 더욱 빠르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팀 (Tel. 02-3459-2815, 280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ipa.org) 사업공고 참조」

# 2012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 신청 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유도하고 우수 직무발명의 창출과 신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공모 목적

-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관심 및 인식제고
- 우수 기업을 포상하여 R&D 선순환 구조 인식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확산 유도

## ■ 공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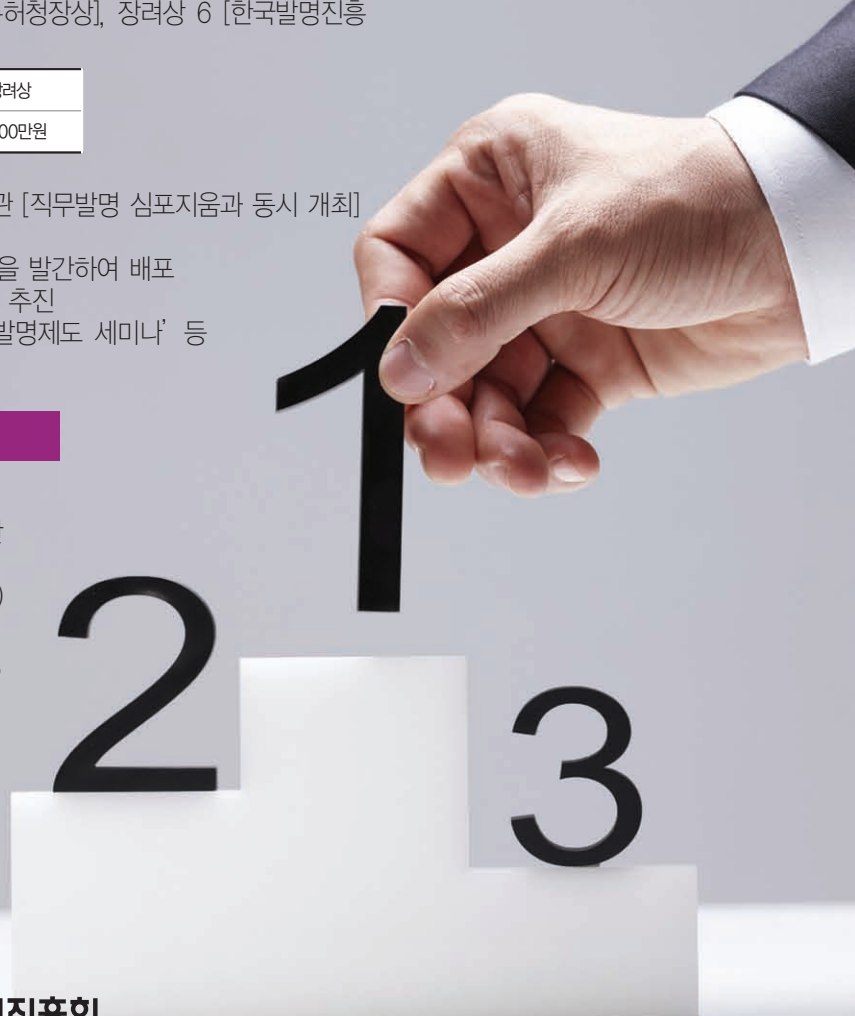
- 개최 기관 : 특허청 주최, 한국발명진흥회 주관
- 공모 주제 : 직무발명제도 운영 사례
- 공모 대상 :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연구소 등 [외국법인 제외]
- 시상 내역 : 10개 기업 시상 [10월 초 개별통보]  
최우수상 1 [특허청장상], 우수상 3 [특허청장상], 장려상 6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시상 내역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상금 내역	500만원	각 300만원	각 100만원

- 시 상 식 : 2012. 11. 26(월) 13:30 한국과학기술회관 [직무발명 심포지움과 동시 개최]
- 특전 사항
  - 수상기업을 바탕으로 직무발명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
  - 언론사와 협조, 제도운영 우수사례의 기획 홍보 추진
  - 최우수 수상기업에 '직무발명 심포지움', '직무발명제도 세미나' 등 사례발표 기회 부여

##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12. 8. 17(금) ~ 9. 18(화) 18:00까지
- 신청 자격 : 최근 5년 이내에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연구소 등
- 신청 서류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사업공고에서 서류 다운로드
- 제출 서류 : 신청서, 운영현황 및 운영관련 서술사항, 입증서류 등
-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방문 중 택1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e-mail : 2845@kipa.org
  - 우 편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발명진흥팀
  - 문 의 : 02-3459-2845, 2793



# 2013년도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신입생 선발공고

## ■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 소개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2009년부터 KAIST 및 POSTECH 과 공동으로 창의적 잠재력을 지닌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 기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 빌 게이츠(MS),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구글) 등과 같이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기업가로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한 학생

이에, 지식재산 기반사회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2013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신입생을 KAIST IP 영재기업인교육원 및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에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 2013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전형일정

- 모집인원 : 교육원 별 80명
- 지원자격
  - 정규학교 재학생 : 2012년 현재 중학교 1학년 ~ 3학년
  - 정규학교 미재학생 : 현재 중학교 1학년 ~ 3학년에 준하는 연령(만13~15세)에 해당되는 자
- 전형 일정(안)

구분		세부내용
입학원서 접수 (세부내용 보기)		▶ '12. 9. 10(월) ~ 10. 8(월), 18:00까지 -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a href="http://ipceo.kaist.ac.kr">http://ipceo.kaist.ac.kr</a> ) -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 <a href="http://ceo.postech.ac.kr">http://ceo.postech.ac.kr</a> )
1차	심사	▶ '12. 10. 11(목) ~ 11. 2(금)
	합격자발표	▶ '12. 11. 5(월), 15:00, 서류접수 홈페이지 공지
2차	전형대상	▶ 1차 전형(서류) 합격자
	일정	▶ 12. 11. 16(금) ~ 11. 18(일) ▶ 장소 : KAIST(대전), POSTECH(포항) - 캠프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차 합격자 발표 시 최종 공지 - 캠프 비용의 일부는 참가자 부담임
최종합격자 발표		▶ '12. 12. 10(월), 15:00





# Column



상표권, 사수하라

미국 특허 제도의 혁명

여기서 잠깐 \_ 책과의 만남

특허, 지구와의 화해

삼성-애플, 美 특허 본안 소송, 그 후



## 상표권, 사수하라

우리는 보통 말한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언을 통해 법적 세상은 너무 냉정하다고. 그리고 항변한다. 모르고 잠잠노라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고 잠잠하는데, 그러나 법은 냉정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무지함을 탓하며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 인생 월사금을 지불하면서 또 배워야 하는 것을.

특허심판원 심판관으로 심결을 하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접한다. 진정 하늘에 하나님은 누가 정의인지 아실 것이지만 그 권리자가 무지로 침묵하고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온당치 못한 승리가 탄생될 때면 마음이 서글퍼진다.

몇 일전 어떤 중년의 아주머니께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처절하게 전화를 했다. 사연인즉, 상표권을 취득해서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같은 업종의 큰 기업에서 변리사를 앞세워 자신의 권리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하고 또 취소심판을 청구해서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매번 변리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기도 힘들고...

이해가 간다. 상표권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시비를 걸어온다. 무엇하자고 이런지 이제는 불편한 감정만 남았다. 자기 같은 조그만 업체를 처음부터 싸움 꺾어 버리려고 저러는 것인지 별생각이 다 들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상표권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도 있다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그 아주머니는 마음속 깊은 한숨만 내쉬며 선생님 같은 공무원들이 우리 같은 서민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감성적으로 접근을 한다.

몇십 년 전 농협창구에서 내 어린 손을 잡고 연체이자를 면하게 해달라고 농협 직원에게 통사정하시던 우리 할머니의 모습이 그 순간 떠오르며 가슴이 미어져 온다.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지만 이미 강자와 약자가 정해진 이후에 평등한 싸움이라는 것은 말장난만 같아 고개를 흔들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다.

상표권을 사수하라. 지상명령처럼 말하고 싶다.

상표등록 후 제3자에게 상표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유념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먼저 상표출원 시 반드시 사용할 상표를 출원하라는 것이다. 출원할 때는 A를 출원하고 사용할 때는 A'를 쓴다면 정당한 상표권의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등록된 A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특히 결합상표(문자+도형 등)인 경우 등록은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 하고 사용 시에는 각자 떼어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역은 취소의 가능성이 크다.

둘째, 출원해서 등록된 상표를 등록받은 지정상품에 사용해야 한다.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등록된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상표권은 사후에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등록권자 자신이 그 상표를 사용하기 어렵다면,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라도 그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등록 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 준비 등으로 필요한 기간이라고 인정해서 취소시키지 않고 있지만, 3년이 넘게 사용하지 않고 장롱 먼혀처럼 보관만 하고 있다면 취소를 면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제3자가 당신에게 상표권을 내어 놓으라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였다는 통보를 받으면 즉시 특허청 민원실이나 변리사를 만나서 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상표권이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되기 때문이다.

권리를 갖는 것은 의무도 수반하는 것이라는 점 잊지 말자. 그리고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미리 파악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자.

그래야 상표권 때문에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설픈게 상표권을 획득했다가는 원하지 않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급기야는 감정싸움으로 변져서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종종 목격한다.

그리고 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택이기에 당신이 선택은 해놓고 쓰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면 선의의 제3자가 그 상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표법은 허락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자.

상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피어난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므로, 그 꽃이 시들거나 병들지 않도록 잘 가꾸고 관심을 가져줄 때만이 진정한 꽃내음을 선사할 것이다. 국화 내음이 그리워지는 9월이다. 2012. 9



이 승 종 심판관  
특허청 특허심판원

# 미국 특허 제도의 혁명

지난해 9월 16일 미국 특허 역사상 대혁명이라고 할 만한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미국 특허법이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한·미 FTA가 올해 3월 15일자로 발효되면서,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게 되고 특허 분쟁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선발명주의” 포기과 “선출원주의” 도입이지만, 이 밖에도 발명자가 아닌 자의 특허출원 허용, 공지공용기술의 국제주의 채택, 최선 실시예 (best mode)의 기재의무 완화, 특허괴물(patent troll)로도 불리는 특허비실시기업(NPE)의 소송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특허 소송 요건 강화 등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므로, 미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 특허법의 개정사항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선출원주의 채택

미국은 1790년 특허제도를 도입한 이래 줄곧 “선발명주의”를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동일한 발명에 대해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저촉심사(Interference) 절차를 통하여 진정한 선발명자를 가려내고, 선발명자가 선출원자에 우선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선(발명자)출원주의”를 도입하여 발명일이 아닌 출원일을 기준으로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의 선출원이 있는 경

우, 선출원 발명이 후출원 발명을 모방하여 나온 것인지를 결정하는 파생(derivation) 절차를 신설하였다. 선출원주의와 파생절차는 2013.3.16. 출원부터 적용된다.

미국이 그동안 혼자 고집하던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harmonization)에 크게 다가서게 되었고,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 진입을 꾀하던 우리기업들은 누군가 갑자기 서랍 속 발명노트를 꺼내 들고 자기가 선발명자라고 주장하

여 특허권을 뺏기는 낭패를 겪지 않게 되었다.

### 발명자가 아닌 자에 의한 특허출원 허용

구 특허법하에서는 발명자 이름으로만 특허출원을 할 수 있었고, 출원 이후 발명자가 속한 회사 등 제3자에게 특허출원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었다. 개정법에서는 법인 명의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되어, 회사는 특허출원 전에 소속 연구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 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출원 시 발명자의 선서나 선언서(Inventor's oath or declaration)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원인(회사 등)이 발명자 선서를 대신하여 대체진술(substitute statement)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2012.9.16. 이후 시행된다.

### 공지·공용기술의 국제주의 채택

구 특허법하에서는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 국제주의와 국내주의를 혼용하였다. 즉, 발명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특허되거나 간행물에 기재된 것 또는 미국 내에서 공용 또는 판매 중인 기술만 선행기술로 인정하였다. 개정법은 유효출원일 이전에 국외에서 공용 또는 판매된 것도 선행기술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지·공용기술의 국제주의는 2013.3.16. 출원일(우선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 특허등록 전 제3자의 정보제공제도 도입

구 특허법에서는 제3자가 특허등록을 막을 수 있는 선행기술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 출원공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정보를 제출해야만 했다. 개정법에서는 그 기한을 대폭 늘려서 출원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심사관의 최초 거절이유 통지일 전에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물론 정보제공은 등록결정서 발송일 전에 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2.9.16. 이후 시행된다.

### 등록 후 재심제도 도입

구 특허법하에서는 특허등록 후에 새로이 발견된 선행기술 등에 의해 누구든지 특허성의 재심사(reexamination)를 청구할 수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실제 이해관계인이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선행기술을 포함한 모든 증거(다만, 최선 실시 예 요건은 제외)를 바탕으로 특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등록 후 재심(post grant review)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후 또는 등록 후 재심 절차 종료 이후에는 선행 특허와 간행물에 기초하여 신규성 및 비자명성의 결여를 이유로 재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2012.9.16. 이후 시행된다.

### 최선 실시 예 기재 요건 완화

구 특허법은 특허 명세서에 발명의 효과가 가장 우수한 최선 실시 예(best mode)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최선 실시 예 요건을 유지하되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이유로만 삼고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서 제외시켰다. 즉, 최선 실시 예를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거절은 되지만, 심사단계를 무사히 통과하여 일단 등록이 되면 무효나 취소가 되지는 않게 되었다. 이 규정은 2011.9.16. 개정법 발효와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 특허 허위 표시 등

구 특허법은 타인의 특허번호를 도용하거나, 특허받지 않은 제품을 특허제품이라고 표시하는 특허 허위표시(false marking)에 대하여 누구나 고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은 미국 정부만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허표시의 편의를 위해 제품에 특허번호를 대신하여 "Patent" 또는 "Pat." 만 표시하고, 특허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웹페이지 주소를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특허표시를 대체할 수 있는 가상 특허표시

(virtual marking)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특허 표시 관련 규정은 2011.9.16. 개정법 발효와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 침해 주장에 대한 선사용자의 방어권 인정 확대

종전에는 선사용을 근거로 한 침해에 대한 항변 또는 방어권을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서만 인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이를 모든 기술분야로 확장하였다. 즉, 특허권자 아닌 자가 특허권의 우선일로부터 1년 이전에 특허발명을 상업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2011.9.16. 개정법 발효와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 특허소송 남발 억제

종전에는 특허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송병합(Joinder) 제도를 이용하여, 한 번의 소송으로 다수의 피고인들을 한꺼번에 제소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비실사업체(NPE)가 한 건의 소송으로 다수의 기업을 제소하여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로열티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개정법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특허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일괄소송 요건을 강화하였다. 즉, 일괄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통점(납품-제조-판매 공급체인, 기술-제품 간의 연계성 등)을 증명하도록 하였다. 개정 특허법에 따라 사건마다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소송 진행이 복잡해져 소송남발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규정은 2012.9.16.부터 시행된다.

### 수수료 관련

개정법은 소기업(small entity)에 대해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는 기존의 감면에 더하여, 초소규모 기업(micro entity)에 대해서는 75%를 감면해 주고 있

다. 한편,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서면출원에 대해서는 기본 출원료 이외에 40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여 전자출원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 수수료 대부분을 일괄적으로 15% 인상하였다.

아울러, 우선 심사(prioritized examination) 신청료 4,800달러(소기업의 경우는 2,400달러)을 추가로 내면 발명의 대상에 상관없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수수료 관련 개정 규정은 2011.9.26. 이후에 시행되고 있다.

이번 미국 특허제도의 개정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 부를 만하다. 이번 개정으로 미국 특허제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의 제도와 상당한 수준의 조화를 이루게 됨으로써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 내지 통일화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기업들은 한·미 FTA 발효로 우리 앞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온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개정된 미국 특허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분쟁대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국제 특허 분쟁동향, 특허괴물 활동현황, 소송사례 분석자료, 해외 지재권 관련 제도, 해외 진출기업 피해·대응 사례, 해외 지재권 전문가 현황 및 주요 지재권 이슈 심층 분석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 서비스가 우리기업의 지재권 전략수립과 분쟁 대응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2. 9 |



안재현 국장  
특허청 고객협력국

# 책과의 만남

여기서 잠깐

## 서정과 기술의 만남 기술시 창작론의 요람

### 기술시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우리 정신문화 창달의 핵심인 시문학의 하나로 세계 처음 창시한 '기술시'와 '기술시창작론'의 새로운 장르를 한국 문학계에서 공인을 받았다. 앞으로 이 학문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격동 속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현대 시문학사의 혁신적인 지평을 열어 우리 문학의 자존심을 세계에 떨치고자 한다. 더욱이 미래 지향적인 시문학의 새 역사를 창출하고 기술시 학문의 폭을 크게 넓히며 유구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세운 논술로 우리 문학의 명성을 승화시켜 현대 시문학의 신토불이 기술시와 기술시창작론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학문 우리문인의 긍지로 기술문학 창조문화를 빛내며 문학의 향기 속에 화합과 관용으로 이 겨레 이 나라를 길이 빛내고자 한다.

이에 따라서 필자는 1991년부터 과학기술과 문학을 접목시킨 '기술시'를 창작해 오다가 드디어 2009년 1월에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시문학의 새로운 이론의 실증인 『기술시창작론』의 저서를 내놓았다. 그동안 무역촉진, 과학기술진흥, 산업육성, 보훈실행과 지식재산권 및 문학발전에 몸 바쳐 옴으로써 대통령으로부터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주요인사에 선정되어 감히 시인의 긍지를 가지고 기술시 문학의 새길을 연 '기술시창작론'의 시문학 논리에 대하여 제1편 기술시 이론, 제2편 기술시 작품 제3편 일반 시작품으로서 제1장 기술시의 창시 제2장 기술시의 요체 제3장 기술시와 기술시창작론의 공인 제4장 입증 자료의 요지를 저서로 상재하오니 현대 시문학의 독특한 장르를 마련한 기술시창작론의 기술시가 우리 문학의 산 역사를 빛내는 계기가 되고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며 필요한 도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특허, 지구와의 화해

**링** 킨 대통령은 “특허제도는 천재라고 하는 불꽃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특허제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오늘날 세계 주요 선진 국가들이 모두 특허제도를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허를 기술경쟁력 확보의 주요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과연 특허제도는 인류가 만든 훌륭한 작품이며, 뛰어난 제도의 발명 중에 하나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또한, 특허제도는 산업의 발전과 인류의 행복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제도를 비롯한 물질적인 문명관에 근거한 산업발전의 장려에 따른 공업화는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여 지구라는 혹성의 3분의 1을 사막화에 이르게 할 수 있고, 2100년도에는 지구상 동식물의 50%를 멸종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마츠우라(松浦)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지구와의 화해』라는 저서에서 말하고 있다.

이제 특허도 지구와 화해가 필요하다. 지구 환경보호가 인류의 당면한 공통과제가 되었다. 우리들의 고귀한 공유 유산인 지구, 인류의 하나뿐인 거처를 구하기 위해 오늘 우리 인류가 해야 하는 책임과 임무는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효과 가스 배출을 억제하면서 산업과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제도적 방안에 대해 필자의 개인적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특허를 활용하여 지구환경을 지키자. 현재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특허기술은, 태양력 풍력 바이오수력 지열 해양 등의 에너지를 이용한 재생 에너지분야와,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그 에너지를 얻는 연료전지 분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정부의 친환경 기술개발 육성지원에 힘입어 특허출원에 있어서도 이 분야의 연간 출원건수는 2001년 1,522건에서 2010년 5,572건으로 10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증가하고는 있으나,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며, 지구의 환경을 지킬 수 있고 새로운 기간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친환경 코아(core) 특허기술의 연구개발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친환경 특허기술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Eco-특허(친환경특허)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Eco-특허 평가제도는 현행 특허심사와 함께 환경 친화성 또는 온실효과 가스 배출 정도도 심사하여 모든 특허권에 환경친화성 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각종 제도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일본, 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은 친환경 녹색 특허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우선 심사하여 주는 제도를 채택하여 우대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친환경 기술 육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상의 지원책이 기대된다.

나아가서 IBM, 노키아, 캐논, 소니 등 일부 대기업들은 친환경 분야의 일부 특허권의 무상개방을 선언하고 인류 공생(共生)을 제창하고 있는 바, 다른 많은 기업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질사회에서 지식재산권 사회로의 과도기에 있는 지금,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코아 Eco-특허 기술의 탄생과 지구환경보존을 위해 과학자, 정책결정자 나아가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2012. 9



황 동 울 책임심사관  
특허청 공조기계심사과



# 삼성-애플, 美 특허 본안 소송, 그 후 미국의 편파판정, 삼성 LTE로 반격

## 삼성·애플소송 향후 예상 시나리오

소송 장기화

미국 내 소송 대법원까지 장기전  
미국 외 전 세계 특허소송 동시다발적 진행

특허료 협상

애플 디자인 특허 인정시 거액배상  
크로스 라이선싱 등 로열티 협상 후 소송 취하

새로운 특허 소송 제기

신제품에 대해 LTE기술 기반의 통신 특허로 새로운 소송 제기  
삼성전자 제품 디자인 대폭 수정

### IT 모르는 배심원단, 삼성 특허 무시한 채 애플 유리 '편파 평결'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번 미국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을 살펴보면 '미국땅에서, 미국인에 의해, 미국 기업에, 패배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허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 가운데 공학적 지식을 갖고 있

는 사람은 배심원단장 벨빈 호건 씨를 포함해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6명의 배심원은 사실상 IT 문외한이다. 이들은 자국 기업에 대한 감성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평결에 대해 “미국 특허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둥근 모서리와 격자형 아이콘배열 등 디자인 특허를 인정된 부분을 놓고 미국 네티즌도 비판에 나섰다. 한 네티즌은 “버거팅이 맥도날드 고소하겠네. 둥근 모양의 햄버거를 판다는 이유로”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처음 차를 발명한 사람이 바퀴 4개, 핸들로 튼을 하는 등의 디자인 특허를 내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라며 비꼬았다.

이번 미국 재판은 전 세계 9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과 같이 디자인(애플) 대 통신(삼성전자)의 대결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유럽이나 한국에서 나온 판결과 정반대였다. 미국에서는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특허는 ‘스마트폰을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네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것’, ‘스마트폰 앞면 아래쪽에 홈버튼을 배치하고, 옆면에 볼륨키 등 기능키를 배치한 것’,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서 아이콘들을 마치 바둑판 모양으로 배치해둔 것’ 등이다. 배심원들은 “애플도 소니와 LG전자 프라다폰 등의 디자인을 참고해 아이폰을 만들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무시하고 모두 애플 손을 들어줬다.

또 애플이 주장한 바운스 백(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리면 다시 튕겨져 화면의 끝을 알려주는 것)이고, 핑거 투줌(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 화면을 두 번 두드리면 화면 안의 문서가 확대되는 기술 등 3가지에 대해서도 모두 애플의 특허라고 배심원들은 평결했다.

미국 배심원단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대부분 인정

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가 주장한 통신 표준특허는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 특허는 분할 전송되는 데이터 구분 기술, 중요도별 데이터 송신 전력 감소 기술 등 휴대폰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데이터 통신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 5건이다. 특히 한국법원의 판단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정반대 판단이 나온 것은 필수 표준(standards-essential) 특허에 관한 ‘프랜드(FRAND)’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이다. 누구나 표준 특허기술을 쓰되 나중에 특허 권리와 협상해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때 권리가 조건을 차별적으로 내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 법원은 프랜드 선언을 했다고 해서 삼성이 애플의 기술사용 금지 처분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미국 배심원들은 프랜드 선언을 한 삼성이 애플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일부 삼성 특허를 인정한 경우에도 부품 업체가 사용 허락을 받고 생산한 부품을 이용했기 때문에 애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특허 소진’ 판단을 내렸다.

### 삼성, 애플보다 우위 LTE 특허 앞세워 대반격 나선다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준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삼성의 특허와 기술력으로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월 24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애플간 세기의 특허소송에 대한 미국 산호세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내심 ‘일진일퇴(애플의 디자인 특허 주장과 삼성전자의 통신특허 주장을 모두 일부 인용하는 것)’의 평결을 예상했지만, 배심원단은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현지에서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완패함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혁신’을 바탕으로 통신특허를 주무기로 장착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가 모두 인정받지 못했지만 LTE분야에서 표준특허 외에도 상용특허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출시될 애플의 신제품이 LTE(롱텀에볼루션) 기술적용을 피해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표준 특허’는 삼성이 보유하고 있어도 필수 기본기술이기 때문에 전 세계 업체들에 적정 대가를 받고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도 아이폰을 만들면서 삼성의 표준 특허를 사용했다.

하지만 ‘상용 특허’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기술이라 공개할 의무가 없다. LTE폰처럼 고성능 제품 일수록 ‘상용특허’ 기술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삼성이 애플의 신제품을 분석한 뒤, 특허침해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번 소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관계자는 “LTE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의 통신망과 네트워크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특허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애플이 먼저 크로스 라이선싱 등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승기가 삼성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과 삼성전자는 각각 사내미디어 ‘삼성전자 Live’와 ‘미디어 삼성’에 게재한 공지문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는 ‘혁신’을 지향하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혁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허소송의 장기전에 대해서도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판사의 최종판결이 남았고, 이후에도 여러 재판과정이 남아 있어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 대한 판결도 아직 한 달여가 남았을 뿐만 아니라, 판결결과에 따라 항소가 이어질 경우 소송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미국 현지에서의 재판진행이 1단계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전 세계 9개국에서 특허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무선통신 분야 리더로서 당사의 혁신적인 제품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 ‘삼성·애플’ 세기의 인물열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 본안소송 1심에서는 삼성전자의 완패로 끝났지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양 사의 특허전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삼성과 애플의 최고경영자에서부터 판사, 변호사, 증인, 배심원까지 다양하다. 흡사 존 그리섬의 법정 스릴러 소설을 보는 듯하다. 이 인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특허전쟁 기사가 나올 때마다 되짚어야 하는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 등장인물을 꿰고 있어야 기사를 읽는 내내 긴장감이 더해지는 것도 물론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애플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다. 잡스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를 본 후 “왜 내 제품을 모방해!”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 특허 소송도 여기에서 시작됐다. 이건희 회장은 “못이 튀어나오면 때리려는 원리”라며 맞불을 냈다.

현재 두 회사 특허전의 주인공은 단연 최지성 부회장과 팀쿡 CEO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 전체를 진두지휘해야 하고, 스티브 잡스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기 때문이다.

최 부회장은 현재 삼성 미래전략실장으로 그룹 2인자에 올랐지만, 애플과의 특허전이 시작될 당시 삼성전자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지금껏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팀 쿡 CEO도 지난해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 특허 소송을 이끌고 있다. 팀 쿡은 잡스와 달리 특허 소송을 원치않는 인물로 알려지면서 양사가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아직도 특허전쟁은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무산됐다.

최근 미국 본안 소송에서 증거물로 이메일이 공개되며 주목받는 또 다른 인물도 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책임지는 신종균 IM부문 사장이다.

공개된 이메일에는 2010년 2월10일 신종균 당시 무선사업부장(사장)과 내부 직원들의 간담회 내용이 적

혀 있다.

이메일을 살펴보면 아이폰 성공으로 인한 후폭풍에 큰 위기의식을 느낀 신종균 사장이 내부 직원을 독려하는 부분이 낱낱히 드러나 있다. 신 사장은 아이폰과 비교하며 UX(User eXperience : 사용자 경험) 강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노키아만 주목하느라 폴더, 바, 슬라이드 형태 등의 휴대폰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경쟁사인 애플의 아이폰과 비교하니 UX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이는 디자인의 위기다”라고 질책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삼성과 애플의 변호인단 대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탄탄한 논리와 뛰어난 화술로 10명의 배심원을 설득해야 하는 변호인의 대결은 이번 소송의 최대 승부처다.

삼성전자의 변호를 맡은 찰리 버호벤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 최고의 변호사로 꼽힌다. 1985년 아이오와 대학교, 1988년 아이오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IBM, 구글, 쉘컴, 야후, 모토로라 등 글로벌 IT 기업 변호를 담당하는 등 특허 부문에서 잔뼈가 굵다. 지난 2010년에는 ‘아메리칸 로우어’가 수여하는 올해의 지적재산권 소송 부문 상을 수상하고, ‘데일리 저널’이 선정한 캘리포니아 톱 100 변호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애플 측 변호인인 헤럴드 매켈리니는 지난 2006년 삼성SDI와 파이오니어의 특허소송에서 파이오니어 측 변호를 맡아 승소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는 삼성 저격수다.

매켈리니 변호사는 지난 1970년 산타클라라 대학교, 1975년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전자업체, 생명과학기술 관련 소송에서 활동해왔으며 특허, 저작권, 무역 분쟁 등에 강하다.

화려한 이력에 걸맞게 두 사람은 미국 본안 소송에서

팽팽한 논리 싸움을 펼치고 있다.

버호벤 변호사는 변론에서 “직사각형 디자인은 애플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다른 기업들이 사용해 왔다”며 2006년 출시된 LG 전자의 프라다폰을 예로 들었다. 애플 특허가 원조가 아니라 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그는 또 “아이폰이 산업과 경쟁을 고무한 것은 인정한다”고 발언하는 등 직설적 화법과 완곡한 화법을 넘나드는 변론 테크닉을 발휘하고 있다.

매켈리니 변호사는 직설적인 화법 위주로 변론하고 있다.

그는 “애플은 삼성전자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다”며 플립폰, 쿼터 자판폰, 슬라이드폰 등을 배심원단 앞에 꺼내 놓았다. 이어 “아이폰이 나오기 전과 후의 삼성전자 휴대폰을 보라. 삼성전자는 혁신보다는 손쉬운 길을 걷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애플의 전 디자이너인 ‘신 니시보리’도 미국 특허 본안소송이 시작된 후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명이다.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아이폰의 디자인은 소니의 제품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해 4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2006년 출시된 아이폰이 먼저 나온 소니의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했다며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를 운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니시보리는 당시 아이폰을 디자인한 애플의 산업 디



자이너다. 삼성전자는 그를 소니 디자인 차용 여부를 증언해줄 인물이라고 판단, 핵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니시보리는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여 왔다. 삼성전자가 증인 신청을 하자 본안소송을 앞

두고 한달 전 돌연 퇴사했고, 지난 7월 29일에는 법원에 서한을 보내 “재판에 출석할 용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니시보리를 증언대에 세울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그가 2심 이후 법정에서 서느냐 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 니시보리는 지난 2002년 6월 프리랜서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 애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애플이 하우스킹 디자이너인 니시보리 신을 전격 스카우트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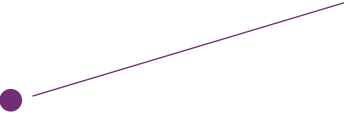
2012. 9 |



송영록  
이투데이 산업부 기자



# Report



일본에서의 결합상표에 관한 식별력 판단 실무

여기서 잠깐 \_ 특허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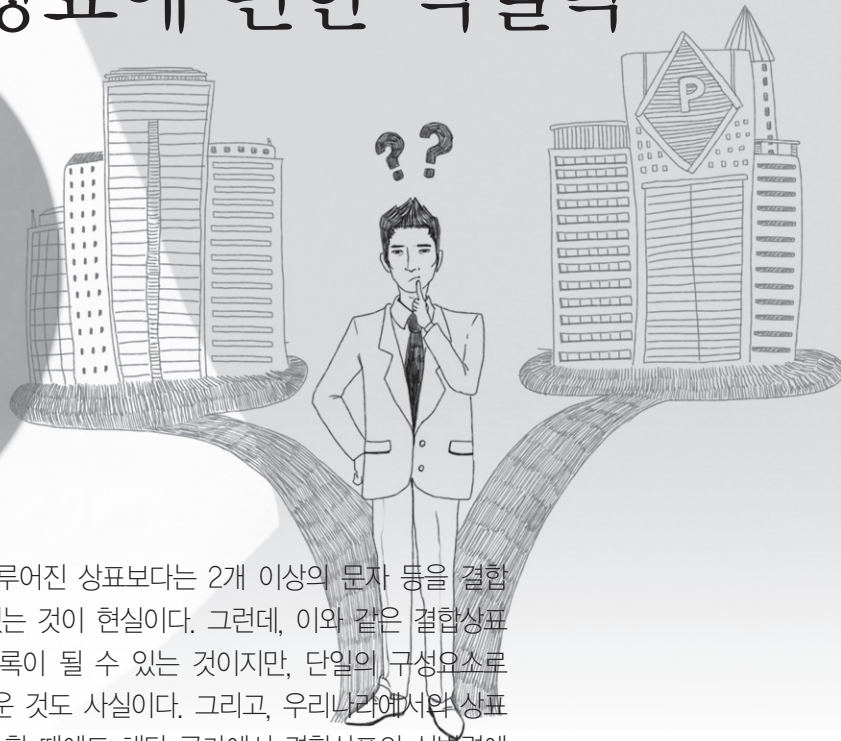
PCT 국제출원 중국진입 절차

한중 FTA시대, 기업의 중국진출과 지식재산



독일의 특허소송

# 일본에서의 결합상표에 관한 식별력 판단 실무



현대 상표에서는 단일의 구성요소로 단순하게 이루어진 상표보다는 2개 이상의 문자 등을 결합하여 만든 결합상표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합상표들에 대하여도 상표법상 식별력을 인정받아야 상표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일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상표에 비해서 그 식별력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할 때에도 해당 국가에서 결합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등록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제도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결합상표에 관한 식별력의 판단 실무 중 특히 그 적용이 많이 검토되고 있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일본으로의 상표출원 시 결합상표에 관한 등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한다.

## 일본 상표법에서의 식별력에 관한 규정

일본 상표법상 식별력 판단에 관한 규정은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①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②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관용되고 있는 상표 ③ 그 상품의 산지, 판매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

상을 포함한다.), 가격 혹은 생산 혹은 사용의 방법 혹은 시기 또는 그 서비스업의 제공장소, 질, 제공용으로 제공하는 물건, 효능, 용도, 수량, 양태, 가격 혹은 제공방법 혹은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부터 된 상표 ④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⑤ 극히 간단하고, 또,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

표 ⑥ 전 각 호에 해당되는 것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인 것을 인식할 수 없는 상표”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1호는 우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 제2호는 우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관용표장), 제3호는 우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기술적표장), 제4호는 우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제5호는 우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그리고 제6호는 우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상표법과 다른 점은 단지 우리 상표법상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규정만이 없다는 것이다.

###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적용에 대한 검토

해당 규정은 일본 상표법상 이른 바 광의의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를 등록하지 않는 취지를 정한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에서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 것 이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인지를 인식할 수 없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상표의 자타상품 식별력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는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제1호 내지 제5호까지에서는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구체적인 상표를 이른 바 예시적으로 게재하고, 그것 이외에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것을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제6호는 상표의 자타상품식별력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고, 게다가 법문상으로 볼 때에는 제1호 내지 제5호까지 게재된 것을 제외하므로, 어떤 것이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는지 알기가 어려운 규정으로 인식되

고 있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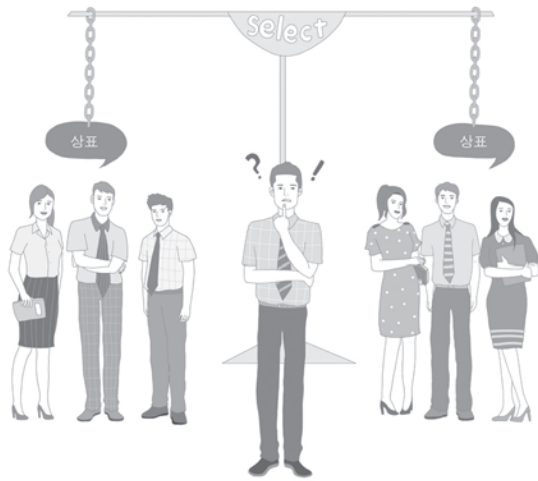
따라서, 결합상표에 있어서 해당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여부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는 바, 결합상표 중, 예를 들면, 보통명칭과 품질, 산지 등이 결합된 상표<sup>2)</sup>, 그 밖의 간단한 기호에 보통명칭이나 품질, 산지 등을 결합시킨 상표 등이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또는 제5호에만 각각 해당되는 것인지, 제1호, 제3호, 제5호 등의 각호에 모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제6호에만 해당된다고 하여 등록을 거부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일본의 상표심사실무면에서 그 적용상의 논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아 “栗羊羹”과 같이 특수상품의 보통명칭으로 보여지는 것은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sup>3)</sup>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보통명칭과 다른 문자가 결합된 것에 관하여, “Mode Robe”라는 상표에 대해서, 일본 특허청은 이 상표가 품질, 스타일 등을 나타내며 ‘유행’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단어 “Mode”와 ‘의복’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의 보통명사 “Robe”를 결합시킨 상표로 보면서, “Mode”라는 용어는 의복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양자를 결합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이트가운을 포함시킨 상품의 보통명칭을 표시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이 사안에 대해서 동경고등재판소는 이들 2개의 단어가 의복관련 일반인에게도 특성과 보통명칭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해당 상표와 같이 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드문 일이므로, 해당 상

1) 工藤莞司, 実例で見る 商標審査基準の解説, 社団法人 発明協会, 第5版, 2006, 100쪽.

2) 예를 들면, “美味まんじゅう[美味(맛좋은)+まんじゅう(만쥬)], “栗羊羹 [栗(밤)+羊羹(양갱)], “大阪羊羹[大阪(오사카)+羊羹(양갱)]” 등을 들 수 있다

3) 網野 誠, 商標(第4版), 有斐閣, 1998, 301쪽..



표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특허청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sup>4)</sup>

그리고, “728 TEX”라는 상표에 대해서도 특허청은 식물류의 보통명칭인 “TEX”에 대하여 상품의 중별기호의 표시인 “728”을 결합시켰으므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경고등재판소는 해당 상표는 그 구성상 및 실제로 사용하는 상태로 보아 제각기 분리하여 관찰해서는 안 되며 전체를 가지고 관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경우, “728”은 상표권자의 상호를 상기할 수 있게 하고 “728”이라는 숫자가 보통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728 TEX”를 전체로서 본 경우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sup>5)</sup>

그러나, 상기와 같은 판례들은 우선 식별력의 판단 시 실제 거래계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 거래계에서 현재의 사용상태만을 고려하여 이것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일본 학계에서 문제가 있는 판례로 소개되고 있기도 하다.<sup>6)</sup>

한편,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식별력 없는 표장들로만 결합된 상표에 대하여 심결례에서는 그 적용규정에 대한 판단이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 기타 식별력이 없는 것에 관한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바, 그것을 표로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7)</sup>

이상과 같은 일본의 심결례들에서는 기타 식별력이

[표] 일본 심결례에서의 판단정리

상 표	지정상품	사건번호	판 단
阪本式ベンチレーター	벤틸레이터 (ベンチレーター)	昭和 39.3.21, 昭和37審2556 (377-19)	흔히 있는 성인 “阪本”와 상품명으로 보통명칭인 “ベンチレーター”가 결합되어 원 거절사정에서는 제3조 제1항 제4호(흔히 있는 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심사단계에서는 거절사정되었으나, 심판단계에서는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トーキョー	식용고기류	昭和 39.7.23, 昭和38審5532 (382-85)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5호(극히 간단하고 또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 “トーキョー”와 산지명칭으로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トキョー”(東京의 일본발음의 가타가나 표기, TOKYO)가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floating floors	건축전용재료관련상품	昭和 40.7.26, 昭和39審6301 (463-87)	부양(floating)구조용으로 제공되는 상판(floors)을 지칭한다는 이유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 적용함. <sup>8)</sup>
SF モーター	전동기	昭和 42.6.29, 昭和40審3245 (600-63)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5호(극히 간단하고 또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 “SF”와 상품명으로 제3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에 해당하는 “モーター”(MOTOR의 일본발음의 가타가나 표기, 전동기)가 결합된 것으로서 심사단계의 거절사정에서는 제3조 제1항 제5호(극히 간단하고 또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심판단계에서는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高見譯版書	판화	昭和 42.10.11, 昭和41審3689 (618-63)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4호(흔히 있는 성)에 해당하는 “高見”과 상품명으로서 제3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에 해당하는 “譯版書”(역판화)가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상 표	지정상품	사건번호	판 단
KS COPY	복사용지	昭和44.3.5, 昭和41審 7899 (738-61)	상표기호로서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5호(극히 간단하고 또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 “KS”와 상품의 용도표시로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COPY”가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MASUDA K. GOOD	금속제건축 전용재료	昭和 45.3.17, 昭和41審6579 (790-33)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4호(흔히 있는 성)에 해당하는 “MASUDA”와 제3조 제1항 제5호(극히 간단하고 또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 “K”, 그리고, 상품의 좋은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제3조 제1항 제3호(품질표시)에 해당하는 “GOOD”이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UC Ueshima	과자, 빵	昭和45.9.8, 昭和42審 5921 (844-55)	상표기호, 품질표시기호로서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5호(극히 간단하고 또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 “UC”와, 흔히 있는 성으로서 제3조 제1항 제4호(흔히 있는 성)에 해당하는 “Ueshima(上島)”가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MARK II	완구	昭和 45.11.18, 昭和44審 3346 (855-89)	상표라는 그 자체를 나타내어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인 것을 인식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MARK”와 제3조 제1항 제5호(극히 간단하고 또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 “II”가 결합된 “MARK II”는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松月堂パン	빵	昭和 46.1.12, 昭和36審842 (861-25)	흔히 있는 가게명으로서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4호(흔히 있는 명칭)에 해당하는 “松月堂”과 상품명으로서 제3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에 해당하는 “パン(빵)”이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상 표	지정상품	사건번호	판 단
27 SHOP	피복관련 상품	昭和 46.8.17, 昭和44審 9333 (907-93)	상표기호로서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5호(극히 간단하고 또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 “27”과, 판매점을 나타내어 제공장소로서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SHOP”이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千葉漢方医薬	약제	昭和 47.3.28, 昭和45審1487 (960-53)	흔히 있는 성으로서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4호(흔히 있는 성)에 해당하는 “千葉”과 상품명으로서 제3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에 해당하는 “漢方医薬”이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VI-POWER	전기기계기구	昭和 48.9.25, 昭和46審5001 (1120-71)	지정상품인 전기기계기구와 관련하여 품질표시로서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VI”와, 제3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에 해당하는 “POWER”가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HONDA SF CONTACT SERVICE	화학품	昭和 48.11.7, 昭和47審62 (1145-95)	흔히 있는 성으로서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4호(흔히 있는 성)에 해당하는 “HONDA”와, 상표기호로서 제3조 제1항 제5호(극히 간단하고 또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 “SF”, 그리고, 판매방법등을 나타내어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CONTACT SERVICE”가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 4) 東高判 昭和34年7月14日 昭和32年(行ナ) 34(取270).
- 5) 東高判 昭和34年7月30日 昭和33年(行ナ) 38(取271).
- 6) 網野 誠, 앞의 책, 301쪽.
- 7) 網野 誠, 앞의 책, 302-307쪽에서의 심결례 참조.
- 8) 이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통명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거나, 용도, 품질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상표전체로서 해당 규정들의 총괄규정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일본에서도 식별력에 관한 총괄 규정으로서 가장 거절이유로 적용하기 편리한 제3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남용의 단면을 보여주는 심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상 표	지정상품	사건번호	판 단
UP 端子	전기기계기구 등의 단자(端子)	昭和 49.1.24, 昭和 44審6139 (1151-67)	기호문자로서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5호(극히 간단하고 또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 "UP"와 상품명으로 제3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에 해당하는 "端子"가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IC SHAVER	집적회로를 사용한 전기 면도	昭和 49.1.25, 昭和 47審2458 (1158-61)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품질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IC"와, 상품명으로서 제3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에 해당하는 "SHAVER"가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IKE FORM	고무합성수 지등의 탄성 기포체를 주 재료로 하여 된 피복	昭和 49.11.12, 昭和 42審 5053 (1223-59)	흔히 있는 성으로서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4호(흔히 있는 성)에 해당하는 "IKE(池)"와, 품질, 원재료표시로서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FORM"이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Amano K.K.	타임레코더	昭和 50.5.17, 昭和 43審 9503 (1271-49)	흔히 있는 성으로서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4호(흔히 있는 성)에 해당하는 "Amano"와, 기호문자로서 제3조 제1항 제5호(극히 간단하고 또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 "K.K."가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MG WHEEL COVER	차바퀴덮개	昭和 50.8.15, 昭和 47審5938 (1291-71)	기호문자로서 제3조 제1항 제5호(극히 간단하고 또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 "MG"와, 상품명으로서 제3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에 해당하는 "WHEEL COVER"가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ネオPコード	끈, 밧줄류	昭和 50.9.17, 昭和 49審62 (1313-93)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품질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ネオ(NEO)"와, 상품명으로서 제3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에 해당하는 "Pコード"가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상 표	지정상품	사건번호	판 단
ELECTRO FIVE	자전거,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昭和 50.10.27, 昭和 48審 4260 (1327-39)	전기를 이용하는 상품이라는 품질표시로서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ELECTRO"와, 상품기호로서 제3조 제1항 제5호(극히 간단하고 또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 "FIVE(5)"가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黒川紬	명주	昭和 55.3.3, 昭和 51審 459 (1882-85)	흔히 있는 성으로서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4호(흔히 있는 성)에 해당하는 "黒川"와, 상품명으로서 제3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에 해당하는 "紬(명주)"가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二木ゴルフ	운동기구	平成 10.10.26, 昭和 58審 1817 (3382-13)	흔히 있는 성으로서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4호(흔히 있는 성)에 해당하는 "二木"과, 상품의 용도표시로서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ゴルフ(골프)"가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GREM?E	조미료, 향신료, 식용유지, 유제품	平成 11.11.30, 昭和 57審 14152 (3405-99)	배아(胚芽)를 나타내는 명칭으로서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것에 해당하는 "GREM"과, 제3조 제1항 제5호(극히 간단하고 또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 "E"가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加州正宗	청주	平成 3.4.11, 昭和 61審 20597 (3665-69)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의 약칭이자 주류의 산지표시로 잘 알려진 것으로서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산지표시)에 해당하는 "加州"와, 지정상품인 "청주"의 관용표장으로서 제3조 제1항 제2호(관용표장)에 해당하는 "正宗"이 결합된 것으로서 상표전체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

없는 것에 관한 제3조 제1항 제6호의 적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안에 따라 다양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상기의 심결례들보다 최근의 일부 심결례들의 경향을 볼 때에는 상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이것이 조어일 경우에는 대체로 해당 결합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여 주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sup>9)</sup> 이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일본상표실무상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 상표들에 대해서 결합상표 전체적으로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중의 어느 특정 조항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지만 기타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경우로 보아 기타 식별력이 없는 것에 관한 제3조 제1항 제6호를 다소 무리할 정도로 다수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판례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보이는 바, “IP FIRM” 사건<sup>10)</sup>에서는, “IP FIRM”이라는 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인 “공업소유권에 관한 수속의 대리 또는 감정 기타 사무, 소송사건 기타 그에 관한 법률사무, 저작권의 이용에 관한 계약의 대리 또는 매개업”에 관하여, 지정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무소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수요자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한 표지라고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지정서비스업의 제공장소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구체적인 사유로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지정서비스업의 제공장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일본상표심사기준 제1.의 “5.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상표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들의 결합으로서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면,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타 식별력이 없는 것에 관한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상표심사기준에서는 별도로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문자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결합상표들의 구성부분으로서 많이 사용되는 일부 단어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우선 일본상표심사기준 제1의 “8.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의 제3호는 “상관습상, 예를 들면, 「Net」, 「Gross」 등과 같이 그 상



9) 이것과 관련된 주요 심결례들을 표로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일본 심결례에서의 판단정리			
상 표	지정상품	사건번호	판 단
Mr. LONDON	피복	平成2.9.6, 昭和59審6423 (3488-25)	상표구성전체를 가지고 “미스터런던”으로 칭호되고, “런던의 남성 제인자”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되어 새로운 조어로서 식별력이 있으므로,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GOLD&GOLD	차	平成2.3.15, 昭和58審11728 (3490-1)	“금과 금”, “금색과 금색” 등의 일련의 의미가 알려질 수 있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품질(색채) 또는 어떤 품질의 좋은 면을 나타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조어로서 식별력이 있으므로,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東京レデース	피복, 침구류	平成3.5.16, 昭和59審5685 (3631-13)	“동경의 귀부인”, “동경의 숙녀”와 같은 숙어적 의미를 나타낸 것이라고 인식되는 새로운 조어로서 식별력이 있으므로,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平岡化成工業	건축 또는 건축전용 재료	平成2.10.11, 昭和57審12172 (3508-37)	흔히 있는 성인 “平岡”과 업종을 나타내는 “化成工業”으로 분리하여 관찰하여야 할 특단의 이유는 존재하지 않고, 일련의 칭호만을 발생시키는 일종의 조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식별력이 있어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10) 東京地判平成17年6月21日判時1913号146頁.

품 또는 서비스업의 수량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문자 등은 원칙적으로 본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열거된 “Net”, “Gross” 등은 상품의 수량 등의 한계 등을 나타내는 표시인 것이기도 하며, 거래상 보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타상품식별력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sup>11)</sup> 특히 수량표시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상품의 수량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도 생각되고, 그와 같은 실무례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해당 단어들 이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일본상표심사기준상에 언급되어 있는지는 명확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sup>12)</sup>

그리고, 일본상표심사기준 제1.의 “8.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의 (1)에서는 “특정의 서비스에 대하여 다수 사용되고 있는 점포명은 본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sup>13)</sup>고 규정함과 아울러 동기준의 해당 규정에서의 (2)에서는 “상기의 (1)에 해당하는 점포명에 「스넥」, 「다방」 등의 업종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가결합한 것 또는 당해 점포명에서 업종을 나타내는 문자를 제외한 것도 원칙적으로 본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 정리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상표심사기준상에서는 나름대로 결합상표에 관한 식별력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하여 심결례 및 판례에서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결과와 적용규정들이 각각 달라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 적용규정에 있어서는 일본 상표법상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가 적용되기보다 기타 식별력이 없는 것에 관한 제3조

제1항 제6호의 적용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상당수 보이기도 한다. 결국 결합상표에 있어서 그 거절조항은 우리나라의 심사실무나 판례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타 식별력이 없다는 것으로 주로 해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그러나, 일본에서의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과 관련하여 한가지 중요한 점은 식별력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표전체적으로 보아 가장 적용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 한가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결합상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이상과 같이 식별력에 관한 규정을 2가지 이상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사실무상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와 제7호 또는 제3호와 제4호 등을 동시에 적용하기도 하는 우리나라의 심사실무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2. 9 |



정 태 호  
원광대학교 로스쿨 교수

11) 工藤莞司, 앞의 책, 107쪽.

12) ibid.

13) (해당하는 예) “알코올 음료를 주로 하는 음식물의 제공 및 茶, 커피 등을 주로 하는 飲食物의 제공”에 관하여 ⇒「愛」, 「純」, 「雪」, 「蘭」, 「올리브」, 「프렌드(friend)」 등이 해당된다.

14) 우리의 심사실무나 심판 또는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도 기타 식별력이 없는 것에 관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가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에서 다수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특허 Q&A



**Q.** PCT 출원 후 출원인 변경 또는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PCT 출원 후 출원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출원인은 수리관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수리관청은 국제사무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국제사무국은 출원인 또는 수리관청의 요청에 따라 출원인의 성명 등을 변경합니다.

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출원정보변경신고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신고구분]을 “출원인변경”으로 체크하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를 첨부하고, 권리 양도에 의한 양수인이 변경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증 등)와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미국 지정에 따른 발명자의 출원인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발명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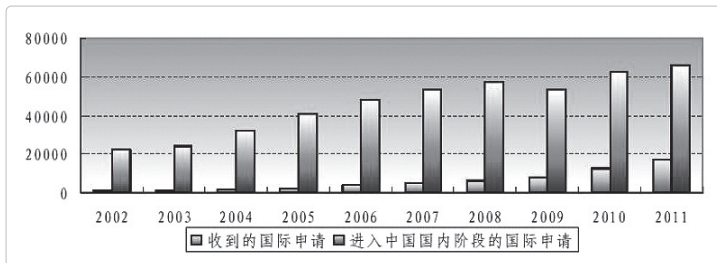
출원인의 명칭은 변함이 없으나 단순히 명칭 및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 “출원정보변경신고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신고구분]을 “출원인 정보변경”으로 체크한 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명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서류생략정보를 기재하고, 증명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원언어가 국어인 경우 출원인 변경 및 정보변경신고시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에 대하여는 영어로 명기해야 합니다.(Rule 4.16)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 PCT 국제출원 중국진입 절차

**아** 래 그래프로부터 중국에 진입하는 국제출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 진입하는 국제출원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진입절차는 중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는데 실무적으로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국제출원이 중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때 유의할 점은 없는지, 국제출원에 관한 주요 특례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연도별 PCT 출원 및 국내단계진입 현황(중국 특허청 자료)]

## 중국 국내단계 절차

### 국제출원일의 인정

#### 특허법 실시세칙 제102조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확정되고 중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특허출원으로 간주하고, 그 국제출원일을 특허법 제28조 규정의 출원일로 간주한다.

### 출원의 유형

국내단계 진입절차를 밟을 때, 출원인이 획득하고자 하는 권리의 유형이 '특허' 인지 '실용신안' 인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획득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3차 개정법에 의한 특

허법 제9조에서 인정하는 이중 출원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국내단계 진입기한

특허법 실시세칙 제103조에 따르면,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 규정의 우선일(이 장에서는 ‘우선일’이라 함)로부터 30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출원이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기한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기한연장 비용을 납부한 후 우선일로부터 32개월 내에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출원인이 국내단계 진입절차에서 우선권 주장을 취하하거나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단계 진입기한은 최선 우선일로부터 기산된다.

## 국내단계 진입 요건

특허법 실시세칙 제104조에 의거하여,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중문으로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한다는 출원서를 제출하고 국제출원번호와 획득할 특허권의 유형을 기재해야 한다.
- 이 세칙 제93조제1항 규정의 출원료, 공개 인쇄료를 납부하고, 필요 시 이 세칙 103조 규정의 기한연장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국제출원이 외국어로 제출된 경우, 외국어 국제출원의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중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발명자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고, 상술한 내용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이하에서는 ‘국제국’이

라함)의 기록과 일치해야 하며, 국제출원에 발명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술한 출원서에 발명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 국제출원이 외국어로 제출된 경우 요약의 중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고, 첨부도면 및 요약의 첨부도면이 있을 경우 첨부도면 부분과 요약의 첨부도면 부분을 제출해야 하며, 첨부도면에 문자가 있을 경우 문자를 상응하는 중문으로 교체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제출원이 중문으로 제출된 경우 국제공개서류의 요약과 요약의 첨부도면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 국제단계에서 국제국에 출원인 변경수속을 한 경우 변경 후의 출원인이 출원권을 향유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필요 시, 이 세칙 제93조제1항 규정의 출원부가료를 납부해야 한다.

## 특허청의 진입 통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국제출원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한 일자(이하에서는 ‘진입일’이라 함)를 명확히 하여 출원인에게 국제출원이 이미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했음을 통지해야 한다.

## 위반시 효과

국제출원이 이미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했으나 실시세칙 제104조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국제단계 보정서의 번역문 제출

### 특허법 실시세칙 제106조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서 보정을 하고 출원인이 보정된 출원서를 기초로 심사를 요구한 경우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보정부분의 중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동 기간 내에 중문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이 국제



## 특허출원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특허법 실시세칙 제51조 제1항을 적용하므로, 실질심사 청구시 또는 실질심사 진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자진보정을 진행할 수 있다.

## 국내단계 진입시의 자진보정

국내단계 진입시 원출원서류의 번역문을 제출함과 동시에,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28조 또는 제41조(소위 'ready-made'가 아닌 'order-made'를 위한 출원서류의 준비를 위한 규정)에 따라 진행한 보정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실시세칙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자진보정으로 간주한다.

## 국내공개

### 특허법 실시세칙 제114조

- ① 특허권 취득을 청구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초보심사를 거쳐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특허공보에 공개해야 한다. 국제출원이 중문 이외의 문자로 제출된 경우, 반드시 출원서류의 중문 번역문을 공개해야 한다.
- ② 특허권 취득을 청구하는 국제출원이 국제국에서 중문으로 국제공개를 한 경우, 국제공개일로부터 특허법 제13조 규정을 적용한다. 국제국이 중문 이외의 문자로 국제공개를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공개한 날부터 제13조 규정을 적용한다.
- ③ 국제출원에 대한 특허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의 공개란 이 조 제1항 규정의 공개를 말한다.

### 임시보호를 요구하는 권리

특허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출원공개 후 임시보호를 요구하는 권리는 국내공개가 완료된 후에 발생한다. 다만,

국제공개가 중문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공개시기

국내공개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특허청이 국내공개의 준비작업을 완료하는 때로서, 중국전리심사지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그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일로부터 2개월 후이다.

## 국제출원의 실질심사

### 선행기술의 검색

일반적으로, 국내단계의 실질심사 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일반출원과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검색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단계의 검색결과를 활용한다.

### 심사절차 절약의 원칙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후에 보정을 진행한 경우 또는 청구항의 주제가 국제단계에서 검색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단계의 검색결과를 다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검색을 진행할 수 있다.

## 우선권 심사

### 개요

중국전리심사지침 제3부 제2장 5.3에 따르면, 국제조

사보고서의 PX류 및 PY류(P류는 타출원의 공개일이 국제출원일과 우선일 사이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E류(E류는 타출원의 우선일 또는 출원일과 타출원의 공개일 사이에 당해 국제출원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의 인용참증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심사관은 국제출원의 우선권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 참고적으로, 국제조사보고서는 국제출원일 이전의 공개 문헌을 선행기술로 삼으며,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출원일 또는 그 우선일을 기준으로 공개문헌을 선행기술로 취급한다.

### 국제조사보고서에 PX류 또는 PY류가 있는 경우

- 국제출원의 우선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PX 또는 PY가 표시되어 있는 인용참증을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 국제출원의 우선권이 성립하는 경우

우선권이 성립하는 경우, PY가 표시되어 있는 인용참증은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PX가 표시된 인용참증에 대하여 확인한다. PX가 표시된 인용참증이 중국 출원이며 그 출원일이 국제출원의 우선일 전이면, 신규성 심사시 특허법 제22조 제2항 후단의 확대된 선원 규정을 고려한다. 즉, 이 경우에는 국제출원이 '저촉출원'에 해당하든지 심사하여야 한다. 2009년 3차 개정법은 저촉출원을 심사할 때 동일 출원인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E류가 있는 경우

인용참증이 중국특허출원이거나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이면서 그 출원일이 당해 국제출원의 우선일과 출원일 사이에 있는 경우, 당해 국제출원의 우선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당해 국제출원의 우선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신규성 판단시 특허법 제22조

제2항 후단의 확대된 선원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 단일성의 심사

### 특허법 실시세칙 제115조

- ① 국제출원이 둘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진입일로부터 이 세칙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기구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구가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 규정의 단일성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거나, 출원인은 규정에 의한 부가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제출원의 어떤 부분이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국내단계 진입시 출원인이 서술한 부분을 심사의 기초로 청구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제조사기구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구가 한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단일성 회복비용을 납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국제출원 중에 조사 또는 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단일성 회복비

심사기초서류에 단일성이 결여된 발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발명이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단일성회복비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이에 대하여 2개월 내에 단일성 회복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부분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취하간주된 부분을 삭제한 보정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분할출원

출원인이 단일성 회복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삭제된 발명에 대해서, 출원인은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다. 실

시세칙 제11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 번역문 착오의 정정

### 특허법 실시세칙 제113조

- ① 출원인은 제출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문자에 대한 중문 번역문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 아래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원 국제출원서류에 따라 보정할 수 있다.
  1.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출원의 공개 또는 실용신안등록의 공고 준비업무를 완료하기 전
  2.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송부한 특허출원이 실질심사 단계에 진입한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 ② 출원인이 번역문의 착오를 보정할 경우, 서면으로 청구하고 규정된 보정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③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서 요구에 따라 번역문을 보정할 경우, 지정기한 내에 이 조 제2항 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한 내에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출원인이 번역문 착오를 발견한 경우

중문 번역문에 대한 착오를 발견한 경우, 특허출원공개 또는 실용신안등록공고 준비업무를 완료하기 전에 진행하거나 실질심사진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번역문착오정정절차비를 납부해야 하며, 심사관은 번역문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 심사관이 번역문 착오를 발견한 경우

중국전리심사지침 제3부 제2장 5.7에 따르면, 심사관이 실질심사과정에서 번역문 착오를 발견한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하여 번역문착오정정청구 절차를 밟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특허법 제26조 제3항 또는 제

26조 제4항을 근거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통지서의 지적에 따라 출원인이 번역문착오정정청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심사관은 번역문착오정정통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에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된다.

## 국제출원서류의 법적 효력

### 특허법 실시세칙 제117조

국제출원에 기초하여 수여받은 특허권이 번역문의 착오로 인하여 특허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한 경우, 원문에 의하여 제한된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에 표시된 것보다 좁을 경우 권리허여시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실질심사는 중국어 번역문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심사관이 원문을 대조 확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초로 제출한 국제출원서류는 보호범위 확정의 기준이 되며, 보정의 근거가 된다. 한국 특허법 제213조는 원문보다 번역문의 내용이 넓은 경우 국제특허출원 특유의 특허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 특허법은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을 예정하지 않고, 원문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 9 |



김 태 수 변리사/책임연구원  
(주)삼성전자 반도체 IP출원그룹

# 한중 FTA시대, 기업의 중국진출과 지식재산

앞으로 체결될 한중FTA에서 지재관련 분야의 협상을 통해서 제도적 조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의 부지 혹은 상이함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곤란을 겪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지식재산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에 특허,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양국 간 제도적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2005년 국가지재권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08년 국가지식산업전략강요(綱要) 수립, '09년 지식재산 전략을 국가 3대 전략<sup>1)</sup>으로 격상하는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책을 국가전략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을 정도로 지재법에 대한 관심도 높고 점점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최근 FTA를 추진하게 되면서 한중 관계가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우리나라의 또다른 성장을 도약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의 협력을 위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공동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서 양자 간 관계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5월 2일 협상개시가 선언되고 난 이후 한중FTA는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5월 14일 제1차 FTA협상(북경), 7월 3일~5일 제2차 협상(제주도)이 있었으며, 8월 22일부터는 3차협상이 중국 위해(웨이하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향후 한중FTA가 체결되고 비준되는 경우 우리

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sup>2)</sup> 그런데 앞으로 체결될 한중FTA에서 지재관련 분야의 협상을 통해서 제도적 조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의 부지 혹은 상이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곤란을 겪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즉 중국과 우리나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지식재산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에 특허,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양국 간 제도적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특허제도에 있어서 차이 및 유의점

### BM발명 및 SW관련 발명의 보호

우리나라 특허법은 제2조 정의조항에서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에서 소프트웨어제품으로 제작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물건발명의 한 형태로 취급하여 사실상 BM발명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BM발명이나 SW관련 발명 및 기록매체의 경우 특허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BM발명이나 SW관련 발명이 중국 내에서 원활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허가-특허 연계제도

우리나라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9조는 허가 등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다.<sup>3)</sup> 또한 이러한 존속기간 연장과 관계에서

약사법에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특허목록을 만들고,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허가지연제도(3년간 시행유보), 최초 무효심결 받은 자에 대한 독점권 부여(3년간 시행유보) 등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아직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

### 비밀유지심사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외국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비밀보호 심사를 거쳐야한다.<sup>4)</sup> 이를 위반하여 외국에 출원한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다시 중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전리권을 수여받을 수 없다. 이에 비해서 우리 특허법은 제41조에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sup>5)</sup> 이렇게 출원된 발명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허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도 있다. 물론 국가는 해외출원을 금지한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은 국방상 필요

- 1) 지식재산 전략을 위한 국가 3대 전략은 과학기술, 인적자원, 지식재산이다.
- 2) 현재 중국내 진출 기업이 2만개, 누적 투자액이 490억 불 및 40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이 진출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중국진출이 활발하다. 이러한 현상은 추진 중인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더욱더 고조될 것이며, 이를 통한 양국 간의 협력관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일반 특허권과 허가를 전제로 시판이 가능한 의약품이나 농약품에 관한 특허권에 대한 형평이 맞게 된다. 특히 의약품 등의 안전성 시험 및 판매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절차에 의해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기간을 보전해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시판허가 과정을 부당하게 연장하여 특허권 사용의 실제 기간을 축소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관행의 차단할 필요가 있다.
- 4) 외국에 출원은 ① 직접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② 중국에 출원 후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③ 중국과 외국에 동시에 출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윤정화, 「중국지식재산권법」, 진원사, 2011, 101~103면).
- 5) 다만, 정부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한 발명에 한하여 특허청이 직권으로 비밀유지 또는 외국 출원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중국은 상대적으로 과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제도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공지예외규정

공지의 예외규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지예외 규정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도 12개월로 규정되어 법규정상 차이를 가지고 있다.<sup>6)</sup> 이에 반해서 중국 특허법(제24조)은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대상을 ① 중국 정부가 주관하거나 그 승인은 얻은 자의 국제박람회에서의 최초전시, ② 규정된 학술회의나 기술회의 최초 발표, ③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누설한 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주장할 수 있는 기간도 6개월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출원보다 서둘러 공지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 61조에서 특허청장은 ①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시행령 제9조에서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녹색기술,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출원, 중

소기업 촉진관련 출원, 국가 신기술이나 품질인증 결과물에 관한 출원, 조약 우선권에 기초한 출원, 실시 혹은 실시 준비 중인 특허출원, 특허청장이 합의한 외국출원,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요청된 출원에 관해서는 우선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은 전리심사지침에서 우선심사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사유를 중국의 국가 이익이나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 출원에 대해서만 우선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심사규정의 차이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출원에 임할 필요가 있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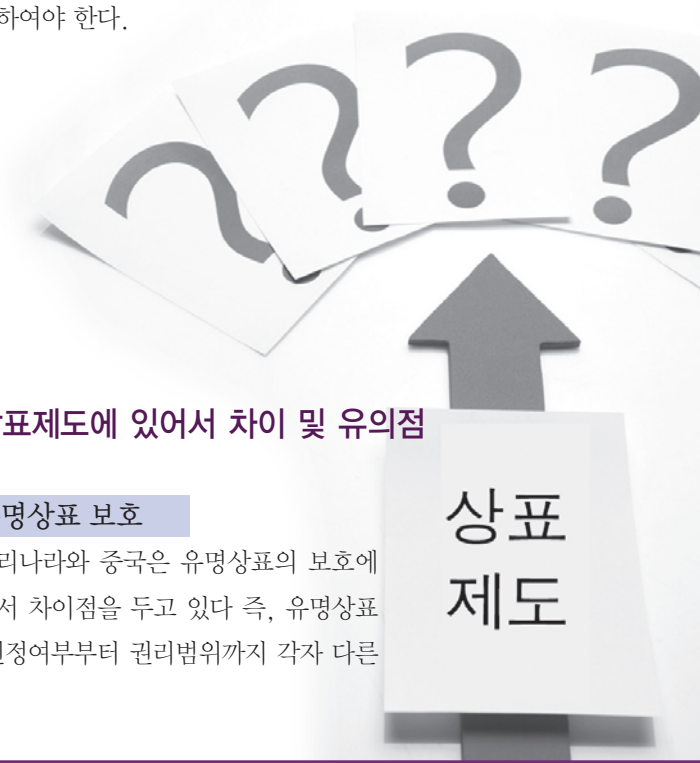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한미FTA의 이행을 위해 심사지연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제도<sup>7)</sup>를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해당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보정의 범위에 있어서도 제한적 범위로만 보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출원하여야 하며, 강제실시권의 범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보다 넓은 범위를 인정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상표제도에 있어서 차이 및 유의점

#### 유명상표 보호

우리나라와 중국은 유명상표의 보호에 있어서 차이점을 두고 있다 즉, 유명상표의 인정여부부터 권리범위까지 각자 다른

상표  
제도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 부등록사유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유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 상표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반해서 중국은 주지 또는 저명성의 개념을 국내에서 관련 공중에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을 향유하는 상표로 정의하고 있어, 외국에서만 유명한 상표에 대해서는 보호가 미흡하다. 또한 우리나라 상표법은 미등록 주지상표의 경우에도 비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 영역에 이르기까지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즉,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은 주지상표가 비유사 상품이나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등록주지상표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미등록주지상표의 보호 및 외국에서만 유명한 상표를 보호하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에서는 이를 보호하고 있지 않아 기본적인 보호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향후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이 많아지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상표가 중국에서 우리나라 상표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서 선등록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중국에서 유명세를 가지고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보호가 어려워 우리기업의 곤란이 예상된다.

### 소리 및 냄새상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한미FTA 이행을 위해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을 상표의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소리 및 냄새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현행 상표법상에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를 보호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등록되는 소리 및 냄새상표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권리화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중국의 최근 상표법 개정안에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을 통해서 동일한 보호대상이 도입되는 경우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 불사용취소심판 등

우리나라는 상표권의 무효(상표법 제71조) 및 취소(상표법 제73조)는 심판절차를 통해서만 상표등록의 무효 및 취소를 다룰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은 이미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10조(사용금지상표), 제11조(식별력 결여상표), 제12조(식별력 없는 입체상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국이 직권으로 당해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제41조 제1항)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불사용심판에 있어 우리나라는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따르면 등록상표의 부정사용 및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누구나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이나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국에 신고 또는 등록취소를 신청함으로써 상표국의 직권에 의한 취소를 촉구할 수 있도록 규정(상표법 제41조, 상표법 실시조례 제39조)되어 있어 차이점을 보인다.<sup>9)</sup> 그리고 상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6) 공지에외규정의 인정기간은 최근 한미FTA 비준에 따라 반영된 것이며, 개정 전에는 6개월이었는데 12개월로 기간이 연장되었다.  
7)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뤄지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8) 등록상표와 등록인명칭,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등록상표를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연속하여 3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국이 심판 없이 직권으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일정기간은 취소심판을 제기한 청구인만이 출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해서 중국은 불사용상표 취소심판 청구인에 대한 우선출원권 부여 규정이 없으므로 제3자가 중간에 출원하여 등록할 가능성이 있다.

### 우선심사 및 보상금 청구권제도

우리나라는 출원 중인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경고를 했다는 조건 하에서 등록된 후 상표권자는 무단사용자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의 경우 우선심사제도나 손실보상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출원 이후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출원인 보호가 어렵다.

### 거절결정, 분할출원 및 이의신청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은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표법은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해서 원출원을 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분할출원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의견진술기회가 없는 경우, 극단적인 경우 우리나라에는 상표권이 등록되는데 반해서 중국에서는 거절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거절이유가 제시된 지정상품을 삭제하거나 분할출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상표국에서 임의로 일부는 출원공고, 일부는 거절결정을 통지하게 된다. 또한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상표국은 거절이유 없는 다른 지정상품에 대하여도 출원공고를 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출원인은 거절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거절이유 있는 상품을 별도로 재출원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 기타

중국은 1류에 대해서 1출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며, 상품류에 있어서 35류 도소매업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표 거절결정이나 이의신청의 불복기간이 15일로 단기이며 결론에 이르기까지 장기가 소요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상표등록시 영문과 중문을 별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유사한 중문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



### 디자인보호제도에 있어서 차이 및 유의점

디자인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부분디자인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데드카피 조항의 부재, 무심사제도, 권리 존속기간의 차이 등이다.

### 부분디자인제도

먼저 부분디자인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2001년 7월 개정법에서는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물품의 부분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도 디자인임을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서는 독립해서 거래될 수 없는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10)</sup> 이에 반해서 중국은 부분디자인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로 인해서 디자인의 특징적 부분이 물품의 일부분에 있는 경우 및 특정 부분만을 모방하는 경우에 대해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즉, 부분디자인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 물품의 일부분에 창작성이 있어 공지 디자인과 비교하여 신규성이 있어 디자인등록을 받더라도, 타인이 등록디자인의 창작성 있는 부분을 모방하면서도 여타부분 변형시 디자인 보호가 불가능하다.

### 상품형태 모방금지

우리나라는 이른바 ‘데드카피’를 막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sup>11)</sup> 기존의 부정법이 상품표지 내지는 영업표지로서의 표지보호를 중심으로 한 것에 비해서 본 규정은 상품의 형태 그 자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sup>12)</sup>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의 경우 이를 모방하여 판매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우리 기업에 있어서 피해가 될 우려가 있다.

### 디자인무심사제도

디자인 무심사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부 물품에 대해서만 부분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은 디자인을 무심사제도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 등록뿐만 아니라 행사에 있어서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즉, 악의적으로 디자인을 등록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기업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불필요한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 기타

중국은 디자인권의 권리 존속기간이 10년으로 15년인 우리나라에 비해서 짧는데, 미국이 14년, 일본이 15년, 프랑스 25년(25년까지 연장가능), EU 5년(최대 4회갱신, 25년 한도)인 기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아 이를 고려하여 지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마치며

최근 중국은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재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인 개선도 수반되고 있다. 그러나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지재보호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중FTA 등 여타 문호의 개방을 하면서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지재관련 제도 혹은 보호수준의 측면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WTO/TRIPs 보호수준을 고수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FTA체결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정도의 제도적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이라면, 이러한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012. 9 |



**이 헌 희** 부연구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대외정책연구팀

9) 중국은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상대방이 사용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조작한 경우에도 자료에 대해 청구인이 반박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0)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제13판」, 세창출판사, 2012, 211~212면.  
11) 2004년 7차 개정법을 통해서 도입된 규정으로 주저성의 요건과 관계 없이 상품의 형태도 그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2) 윤선희 · 김지영, 「부정경쟁방지법」, 법문사, 2012, 18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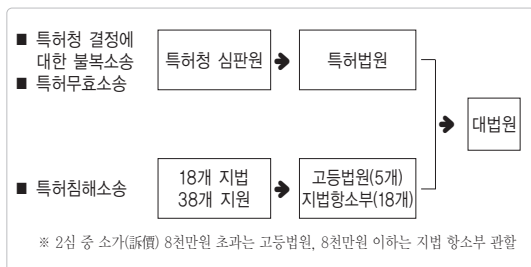
# 독일의 특허소송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소송

우리나라도 독일과 유사하게 특허소송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특허거절불복·무효와 관련된 소송은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진행되고, 특허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소송 구조〉



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지방법원 → 지법항소부·고등법원 → 대법원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독일의 특허소송 체계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면 반드시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거쳐야 하는데 비해, 독일은 직접 연방특허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특허침해소송의 제1심을 전국에 있는 18개 지방법원과 38개 지원에서 처리하는데 비해, 독일은 전국에 있는 116개 지방보통법원 중 12개의 법원으로 사건을 집중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4조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을 인정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의 80% 이상이 서울중앙지방법원(제1심) 및 서울고등법원(제2심)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민사법원들은 대부분 연간 특허소송 건수가 매우 적어(5건 내외)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허소송의 정확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별 특허침해소송 접수 건수〉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1심 소계	125	70	74	129	184
서울중앙	86	33	37	75	153
서울동부	4	3	3	7	4
서울남부	3	2	1	4	1
서울북부	2	0	3	2	3
서울서부	2	3	5	5	1
의정부지법	2	0	1	11	3
인천지법	3	2	1	3	2
수원지법	3	4	4	6	1
춘천지법	2	0	1	2	0
대전지법	2	6	2	3	6
청주지법	1	0	2	0	0
대구지법	3	8	7	3	4
부산지법	7	7	3	3	2
울산지법	0	0	0	0	0
창원지법	0	2	1	0	2
광주지법	3	0	1	4	1
전주지법	0	0	1	1	1
제주지법	2	0	1	0	0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심 소계	20	25	28	41	54
서울	16	19	22	36	51
대전	0	1	3	0	1
대구	1	0	0	3	2
부산	2	4	1	1	0
광주	1	1	2	1	0
대법원	6	6	8	14	14
합계	151	101	110	184	252

(출처: 사법연감)

따라서 우리나라도 특허침해소송의 제1심을 담당하는 법원의 수를 현행보다 대폭 축소하고 전문재판부를 설치함으로써 소송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과 유사하게 일본도 2004년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침해소송 제1심의 관할 법원을 기존 50개 지방재판소에서 2개 지방재판소(도쿄, 오사카)로 대폭 축소한 사례가 있다.<sup>29)</sup> 또한, 2005년에는 지식재산 고등재판소를 도쿄에 신설하여 특허행정소송과 특허침해소송 제2심을 일

29) 일본 민사소송법 제6조(특허권등에관한소 등의 관할)제항 :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회로배치이용권 또는 프로그램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에 관한 소(이하 '특허권등에관한소' 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한 재판소에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한 재판소의 관할에 전속한다.  
 1. 東京고등재판소, 나고야고등재판소, 센다이고등재판소 또는 삿포로 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방재판소 : 東京지방재판소  
 2. 大阪고등재판소, 히로시마고등재판소, 후쿠오카고등재판소 또는 다카마쓰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방재판소 : 大阪지방재판소  
 ②특허권등에관한소에 대하여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전항 각호에 열거된 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간이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한 재판소에도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화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세계 각국도 오래전부터 특허소송의 집중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이미 1977년에 특허법원, 1998년에 특허지역법원을 각각 런던에 설치함으로써 모든 특허소송의 1심 관할을 집중하였고, 미국은 1982년에 특허소송 제2심의 관할을 집중하기 위해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s)을 워싱턴 D.C.에 설치하였다.

한편, 최근 지식재산권이 기업 활동의 중요한 지표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재권 관련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지식재산권 소송 처리 건수 〉

구분	특허 심판원 심결건수	심결취소소송 건수		침해소송 접수 건수		
		특허법원 판결건수	대법원 판결건수	침해 1심	침해 2심	대법원
2006	10,334	1,191	472	125	20	6
2007	11,626	1,251	520	70	25	6
2008	11,628	1,566	581	74	28	8
2009	9,764	1,203	556	129	41	14
2010	9,274	1,013	399	184	54	14
2011	10,570	1,236	370	-	-	-

(출처: 특허청, 특허법원 및 대법원 홈페이지)

##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특허소송 체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와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다.

먼저, 특허소송을 특허행정소송(심결취소소송)과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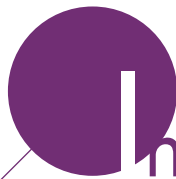
허침해소송으로 이원화하여 각각 다른 법원의 관할로 하는 점은 양국이 같다. 우리나라는 심결취소소송을 위하여 특허법원을 설치하였고, 독일은 연방특허법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허침해소송의 제1심을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과 해당 지원이 처리하는 데 비해, 독일은 특허침해소송 제1심법원을 주(州)마다 1개 또는 2개로 집중하였다. 이는 최근 특허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특허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특허소송을 담당하게 되면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신속성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을 통한 전문성 제고는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이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세계 각국의 특허소송의 관할 집중화 경향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특허소송 체계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립이 시급하다. 2012. 9 |



임 호 순  
특허청 정밀기계심사과장



# Information



세계는 지금 \_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소식  
여기서 잠깐 \_ 발명역사 속으로  
KIPO NEWS \_ 특허청 소식  
여기서 잠깐 \_ 독자마당  
KIPA NEWS \_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여기서 잠깐 \_ 문화산책  
발명만화 \_ 몰래발명이야기 - 텔레비전 리모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건강하게 삽시다 \_ 스트레스 다스려야 장수한다

# 세계는 지금

## 미국 Google社, 저작권 보호를 위해 검색 알고리즘 갱신

지난 8월 10일, 미국 Google社は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용자들에게 최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8월 3주부터 자사의 검색 알고리즘을 갱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Google社の 설명에 따르면, 이번 검색 알고리즘 갱신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들은 Google을 통한 검색 랭킹에서 순위가 아래로 내려가 사용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Google社は 이러한 검색 랭킹 변화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양질의 합법적인 콘텐츠 자료들을 더욱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색 알고리즘이란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검색 엔진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가 요청한 온라인 자료들을 분류·전사하는 전체 과정을 지칭함. 온라인 검색 서비스 기업들은 검색어와 일치하는 정확도, 사용자의 선호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서로 다른 검색 알고리즘을 만들기 때문에 사용자가 동일한 검색어를 입력할지라도 기업별로 그 검색 결과 및 순위가 상이함

이와 관련해 Google社は 최근 한 달 동안에만 430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들이 저작권 침해 이유를 신고가 접수되는 등 하루에 접수되는 저작권 침해 신고 건수가 200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보다 많다고 밝혔다. Google社は 또한 저작권 침해 신고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저작권 침해 신고 자료들이 자사의 검색 알고리즘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Google社は 특정 웹사이트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자사가 판단할 수 없고 오직 법원만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된 웹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배제하지는 않고 그의 검색 순위에만 영향을 끼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갱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이러한 Google社の 자발적인 검색 알고리즘 갱신 계획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IPEC은 이러한 자발적인 조치가 온라인 해적 콘텐츠의 검색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나 합법적인 지식재산 집약 콘텐츠 및 상품 공급자 모두를 위해 온라인 생태계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insidesearch.blogspot.ca](http://insidesearch.blogspot.ca)

## 미국 특허상표청, 2012년 국가 상표 박람회 개최 예정

지난 8월 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오는 10월 19일과 20일에 이들 동안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소재 USPTO 본부에서 2012년 「국가 상표 박람회(National Trademark Expo)」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박람회는 세계시장에서의 지식재산 가치에 관해 대중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것으로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되는 행사이다. 2011년 상표 박람회의 경우 1만 5천명 이상의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자들이 행사장을 방문한 바 있다.

USPTO는 이번 박람회에서 교육 세미나, 어린이 워크숍, 전시



회, 진품 및 위조 상품 진열, 등록 상표의 특징을 표현한 복장을 입은 캐릭터 등을 통해 상표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USPTO는 박람회 기간 동안 (1) 소기업이 지식재산에

관해 알아야 할 것, (2) USPTO 웹사이트 소개, (3)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4) 상표 등록 신청시 유의사항, (5) 미국 원주민인 인디언 브랜드의 존중, (6) 위조 및 해적행위 등을 주제로 12차례의 교육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USPTO는 박람회 관람자들이 미국 정부, 비영리기관, 기업 등 박람회에 참가한 많은 기관들을 살펴보고 상표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미국 걸스카우트 연맹(Girl Scouts of America), 장난감 제조업체인 Mattel社, 미국 육군(Department of the Army) 등과 같은 기존의 기관들 이외에도 미국 적십자사(American National Red Cross), 미국 개조 자동차 경기 연맹(NASCAR), 러트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 등의 기관들이 새로이 참가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uspto.gov>

## 일본 특허청, 디지털 기기의 화면 디자인 등의 보호를 위해 디자인법 개정 추진

지난 8월 4일, 일본 특허청(JPO)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기 조작 화면의 디자인 등을 지식재산으로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일본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보호 대상 및 수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디자인법을 검토해 화면 디자인의 보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다.

\*한편 일본 지적재산연구소(知的財産研究所)는 지난 3월에 현행 디자인법상 화면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상품과의 일체성 요건, 기능 및 조작 요건 등에 관해 검토·분석을 실시하여 「디지털 사회에서

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도 수립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바 있음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제조·생산 기업들은 사용자가 디지털 기기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 본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기업별로 고유의 화면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그러나 일본의 현행 디자인법상 디지털 기기의 화면 디자인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지식재산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JPO는 디지털 기기의 화면 디자인이 해당 상품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미국, 유럽 등과 같이 디지털 기기 조작 화면 등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업제품의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즉, JPO의 이번 디자인법 개정 계획은 지식재산으로서 화면 디자인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JPO는 디자인법 개정을 통해 보호하려는 화면 디자인에 자동차 운전석의 전자 화면이나 게임기의 화면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일본은 일본에서 출원·등록된 디자인이 다른 국가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업 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디자인법 개정안은 2013년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출처 <http://www.nhk.or.jp>

## 일본 경제산업성 등, 직무발명제도 재검토 착수

지난 8월 2일,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과 특허청(JPO)은 2012년 내에 직무발명제도 재검토에 착수할 방침

# 세계는 지금

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2년 내에 일본, 미국, 유럽 및 아시아 등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약 2,000개를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운용 중인 직무발명제도 방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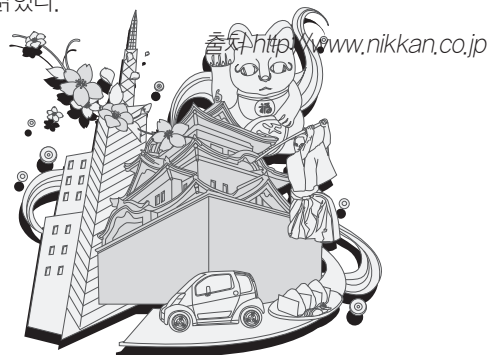
\*일본은 2004년 6월, 「신 직무발명제도」를 골자로 한 특허법을 개정(2005년 4월 시행)하여, 현재 특허법 제35조 단일조항으로 직무발명제도를 규율하고 있음

직무발명제도를 재검토하게 된 배경으로는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로 인해 아시아 등 해외에서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적절히 보호·활용하기 위한 직무발명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기인했다. 따라서 이번 직무발명제도 재검토에서는 2004년 개정된 현행 직무발명제도의 재검토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들의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조사 및 이를 활용한 기업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제산업성은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에 직무발명제도의 국내의 운용상황을 조사·분석하여 종업원 발명의 취급을 포함한 바람직한 지식재산관리의 모범안에 대해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중기계획으로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의 공정표에는 2012년에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계단체와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해당 제도의 국내의 운용상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지식재산관리의 모범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까지 조사연구 및 의견교환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직무발명제도를 비롯한 지식재산관리의 모범안에 대해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국내기업 1,000개社, 해외기업 1,000개社를 선정할 계획이며, 전문 조사기관과 일본 경제산업성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일

본·미국·유럽·한국·중국 등 5개국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상세한 설문 항목은 추후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성과 긍정적 평가

지난 8월 1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SIPO) 텐리푸(田力普) 국장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国家知识产权战略)」 실시 이후 지난 4년간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에서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은 2002년 중국 공산당 제16대 보고서에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개선을 천명한 이후, 2008년 4월 9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요강을 채택하여 같은 해 6월 5일 발표했다.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은 중국 경제·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관련하여 중국 경제 성장의 현황을 고려한 중대한 국가 전략 결정이다.

SIPO는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실시를 위해 매년 국가지식재산 전략 실시 추진계획을 세우고,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2009~2010년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SIPO는 지식재산권 전략의 효과적인 실시를 추진하여 중국이 세계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 지방정부는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실시를 위하여, 각 지방의 독특한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실시 기구

를 설치하는 등 전략 실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지식재산권 전략 체계가 형성되어 지방 정부의 지식재산권 운용 능력이 향상되고,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 또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실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의식 향상과 더불어 지식재산권이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중싱통신주식유한공사(中興通訊股份有限公司)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리를 기업 경영의 모든 과정에 적용하여 발명활동의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고취시킨 결과 PCT 국제특허출원이 세계 선두를 차지했다.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의 실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적극적 추진 및 기업의 능동적 참여로 이뤄낸 시기 적절한 국가 전략의 실천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출처 <http://www.nipso.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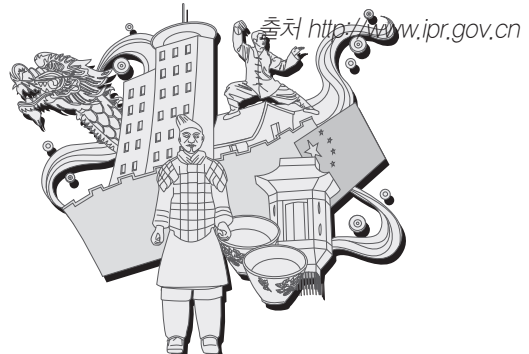
## 중국 인민대학, 「중국 지식재산권 5개 단체 전략협력회의」 개최

지난 8월 3일, 중국 인민대학(人民大學) 쑤저우(蘇州) 연구소는 「중국지식재산권 5개 단체 전략협력회의(中國知識產權五會戰略合作會議)」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5개 대표 협회인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中國知識產權研究會), 중국특허보호협회(中國專利保護協會), 중국저작권협회(中國版權協會), 중화상표협회(中華商標協會), 중국지식재산권법학회(中國知識產權法學研究會)가 최초로 모여 중국 지식재산권 협력에 대해 논의한 회의이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SIPO) 텐리푸(田力普) 국장은 동 회의에 참석하여,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은 중대 기로에 서 있으며 이번 회의에 참석한 5개 협회들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야 발전

의 극대화를 위해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5개 협회들은 중국의 지식재산 사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해당 협회들은 각 협회가 가진 특수성 및 보편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관련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정보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쑤저우의 셀레늄 밸리 과학기술社와 쿤산(昆山人)의 굿메이비社 대표는 이 회의에 참석하여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각 기업의 노력들을 소개하고, 특허침해 등과 관련된 해외 소송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유럽 특허청, 네덜란드 라이스바이크에 新청사 건립 추진

지난 8월 10일, 유럽 특허청(EPO)은 네덜란드 헤이그 라이스바이크(Rijswijk)의 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라이스바이크 청사 건립은 EPO의 청장 및 4명의 부청장, 행정협의회(Administrative Council) 회장, 법무위원회 회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인 라이스바이크 부시장 및 2명의 건축가로 구성된 심사단(Jury)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심사단은 청사 건립의 입찰에 참여한 3개의 컨소시엄으로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시공 및 디자인에 관한 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후 2013년 3월 최종적으로 담당 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 세계는 지금

네덜란드 헤이그 라이스바이크에 위치한 舊청사는 건립된 지 40년이 지났으며, 최근에 부식이 많이 진행되어 새로운 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은 2011년 6월 30일 유럽 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의 행정협의회 회의에서 받아들여졌으며, 이에 따라 EPO는 청사의 시공 및 디자인 관련 국제 입찰을 진행했다. 지난 4월 23일부터 건설회사, 건축가사무소, 엔지니어링 업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입찰이 시작되어 총 10개의 컨소시엄이 서류(디자인, 경비 등)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에서 3개의 컨소시엄이 지난 7월 31일 심사단에 의해 선정되었다.

\*유럽 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는 유럽특허조약(EPC)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EPO 및 행정위원회로 구성됨

新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 5천만 유로이며, EPO는 新청사가 건립되면 라이스바이크의 舊청사를 허물 예정이다. 한편 EPO의 직원은 뮌헨 본사에 약 4,000명, 헤이그에 약 3,0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베를린, 비엔나, 브뤼셀에 지사가 운영되고 있다.

## 국제상표협회, 상품외장 및 브랜드 보호에 관한 세미나 주요내용 소개

지난 8월 1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상품외장(trade dress, get-up) 및 브랜드 보호에 관한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 세미나는 INTA, 유럽공동체 상표협회(ECTA), 상표변리사협회(ITMA)의 공동 주최로 지난 6월 29일 런던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120명의 법조인 및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상품외장(trade dress, get-up)은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적인 외형을 의미하며,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 또는 색채의 결합, 소재(질감), 도형, 설계, 나아가 특정한 판매기법 등과 같은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임

이 세미나에서 영국 지식재산청(UKIPO)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의 관계자는 등록상표 및 등록디자인의 보호 형태에 대해 발표하고, 색채 및 모양과 같은 상품외장을 상표로 등록·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Mars社의 관계자는 '기생적 복제(parasitic copying)'를 유사한 외형을 만들기 위해 여러 특징들을 혼합함으로써 기존 브랜드를 모방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Mountainview Learning社의 관계자는 '제품 인식 심리학(Psychology of Product Recognition)'이라는 강의를 통해, 상품외장 및 브랜드는 제품을 더 빠르게 식별·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FTI Consulting社의 관계자는 브랜드의 가치 측정 및 유사물(look-alikes)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수치화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세미나에서는 담배제품에 대한 영국 정부의 표준 및 간편 포장법(standardized or plain packaging)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De Simone & Partners社의 관계자는 이러한 담배 포장법이 흡연율 감소라는 기대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오히려 유럽연합(EU) 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ECTA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핀란드의 Max Oker Blom 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담배 간편 포장법은 ① 담배 포장에서 브랜드를 삭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오직 가격으로만 상품을 구별하게 되어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며, ② 상표와 제품 간의 연결고리를 제거하여 유명 브랜드 상품과 위조 상품 간의 구분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www.inta.org>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 발명역사 속으로

## 비누

유럽인의 평균수명을  
20년이나 연장시킨 이것?

**비**누는 유럽인의 평균수명을 반세기 만에 20년이나 늘린 획기적 이고 역사적인 발명이었다. 이 비누는 언제 어떻게 발명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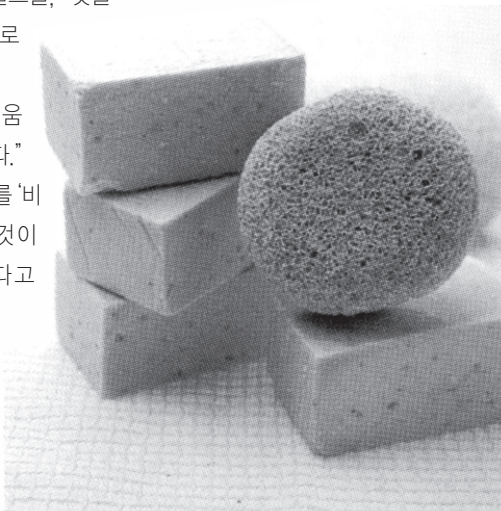
비누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인류와 함께 해 왔다고 알려져 있다. 서양에서는 기원전 25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이 산양기름과 나무의재를 끓여서 비누를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 또 고대 이집트의 경우 재와 기름을 섞어 손 씻는 약품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비누제조는 동식물의 지방에 가성소다나 가성칼리를 반응시키는 방법 또는 목재를 태워 얻은 재의 칼리 등이 이용됐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비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00여 년 전부터이다. 200여 년 전 유럽 사람들은 목욕을 좋아하지 않아 매우 불결했고, 이로 인해 이질, 티푸스 같은 경구 전염병과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처럼 건강이나 위생상태가 심각하다보니 평균수명은 40세 미만에 불과할 정도였다.

하지만 1790년 프랑스의 화학자 니콜라스 르블랑(Nicolas Leblanc, 1742~1806)의 해수의 소금과 암염(巖鹽)을 원료로 소다를 양산하는 방법을 발명하면서 비누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유럽인들을 괴롭혀온 갖가지 질병이 조금씩 사라졌다. 우리 조상들의 경우 녹두

가루, 쌀겨, 쌀뜨물, 잿물 등을 세안제로 사용하였다.

한편 “더러움을 날려 보낸다.”는 뜻에서 이를 ‘비누’라 부른 것이 비누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 물에 뜨는 비누

버려진 원료에서 얻은 기발한 아이디어

**물**에 뜨는 비누는 일본에서 비누공장을 경영하는 후지무라라는 여성에 의해 발명됐다. 그녀는 한 직공의 실수로 못쓰게 되어 버린 원료를 끈질기게 연구해 물에 뜨는 비누를 만들었다.

P&G사의 사장이었던 후지무라는 태국의 방콕을 여행하던 중 강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이 강물에 가라앉은 비누를 찾느라 허우적대는 장면을 보게 된다. 이를 본 후지무라는 물에 뜨는 비누가 있으면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비누공장이 많은 일본의 어느 지역, 점심을 먹기 위해 다른 직공들은 다 나가고 한 직공만이 큰 가마솥 앞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소란스러움에 잠이 깬 직공은 그만 새파랗게 질려 버리고 말았다. 비누 원료가 그만 너무 끓어 솥에서 넘쳐 나와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뒤 거품이 거칠게 일어나 쓸모없게 된 원료를 본 후지무라 사장은 비누가 불에 타지 않고, 거품을 내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는 여기서 착안, 목욕하다 비누를 강에 떨어뜨려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 ‘아이보리 비누’를 출시하여 성공을 거두게 된다.

# KIPO

## 5만원권 지폐, 특허가 지킨다

‘돈의 맛’은 달콤하기에 위조지폐의 유혹은 계속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 중에 위조지폐가 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종래 1만 원권 위조지폐가 대다수였으나, 올해 상반기에 이르러 5만 원권 위조지폐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567%나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완벽한 5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들 가능성은 거의 “0(zero)”에 가깝다. 최고액권인 5만 원권 지폐에는 무려 20여 가지의 위조방지 기술(입체형 부분 노출 은선, 띠형 홀로그램, 색변환 잉크, 숨은 그림 및 은선, 형광 잉크, 돌출은화 등)이 숨어있어 이들 기술을 모두 피해 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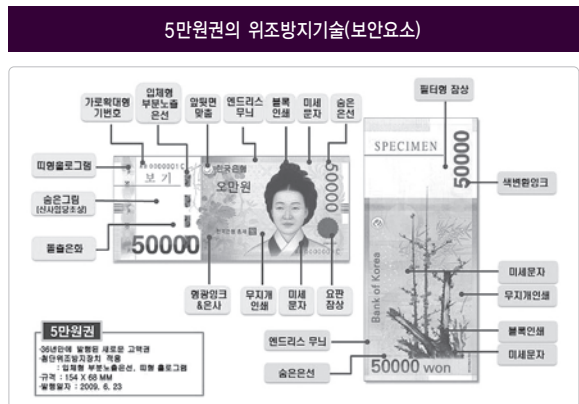
이 중 대표적인 기술은 입체형 부분 노출은선(Motion), 띠형 홀로그램, 색변환 잉크 및 숨은 그림이다. 입체형 부분 노출은선(Motion)은 은행권을 상하로 움직이면 태극무늬가 좌우로, 은행권을 좌우로 움직이면 태극무늬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띠형 홀로그램은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 4괘 무늬가 같은 위치에 번갈아 나타나며, 그 사이에 액면 숫자 50000이 세로로 쓰여 있다. 색변환 잉크는 은행권을 기울이면 액면 숫자의 색상이 자홍색에서 녹색으로 변한다. 숨은 그림은 빛에 비추어 보면 인물 초상(신사임당)이 드러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입체형 부분 노출은선(Motion)에 대한 원천 특허는 미국이, 띠형 홀로그램에 대한 원천 특허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이 갖고 있다. 조폐공사는 색변환 잉크 및 숨은 그림에서 특허를 갖고 있다.

현재 입체형 부분 노출은선(Motion)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10여 개의 특허 포트폴리오로 강력한 특허 방어막을 구축하여 전 세계 11개국 은행권으로부터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변조 방지기술은 은행권뿐 아니라 여권, 신분증, 상품, 의약품, 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한국조폐공사제품 위조방지장치(2009, 한국조폐공사)

## 특허심판원, “SK이노베이션-LG화학 2차전지 특허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 손 들어줘

특허청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특허 제775310호)에 대한 무효심판\*의 심결에서, 심판청구인인 SK이노베이션의 무효주장을 받아들여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고 지난 8월 9일 밝혔다.

\*2011. 12. 9.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30851호, 현재 계속 중임), 이에 대응하여 2011. 12. 20.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 NEWS

이번에 문제가 된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는, 종래의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의 기공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기존 분리막에 비해 열수축과 전기적 단락이 발생하지 않아,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기술로 알려져 있으며, LG화학은 'SRS' (안정성 강화 분리막)이라는 제품명으로 2차전지에 채용하여, 휴대폰 업체인 모토로라, 소니에릭슨과 노트북 업체인 HP, 자동차 업체인 현대기아차, GM, 르노, 포드 등에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의 무효 이유는 특허의 핵심 기술인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 구조에 대한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선행기술에 개시된 분리막의 기공 구조를 일부 포함하고 있고, 효과에 있어서도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일부 효과 또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LG화학의 특허가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것이다.

특허심판원의 황우택 원장은 "신규성, 진보성 판단의 대상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이며, LG화학의 특허도 그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선행기술에 개시된 분리막과 대비해 본 결과 일부 구성이 선행기술의 분리막과 동일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 것일 뿐, LG화학이 현재 생산, 판매하고 있는 'SRS' 분리막이 선행기술의 분리막과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스마트폰 특수로 호황을 누리는 플렉시블 PCB

특허청은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플렉시블 PCB 분야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는 절연기판 위에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도체를 형성시킨 전자 부품이다. 플렉시블 PCB는 연성이 좋은 절연기판(주로 Polyimide film) 위에 동박을 붙여 두께가 얇고 구부러지는 유연성이 좋은 PCB로서, 기존의 PCB에서 구현하지 못한 3차원 배선 구조를 실현하여 전자제품의 소형화 및 경량화가 가능하며 반복굴곡에 대한 높은 내구성을 갖고 있다.

일본의 야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플렉시블 PCB 산업현황'에 의하면 국내 주요 플렉시블 PCB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08년 17.7%에서 매년 성장하여, 지난해 25.9%를 기록했고, 2012년에는 30.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상승세가 괄목할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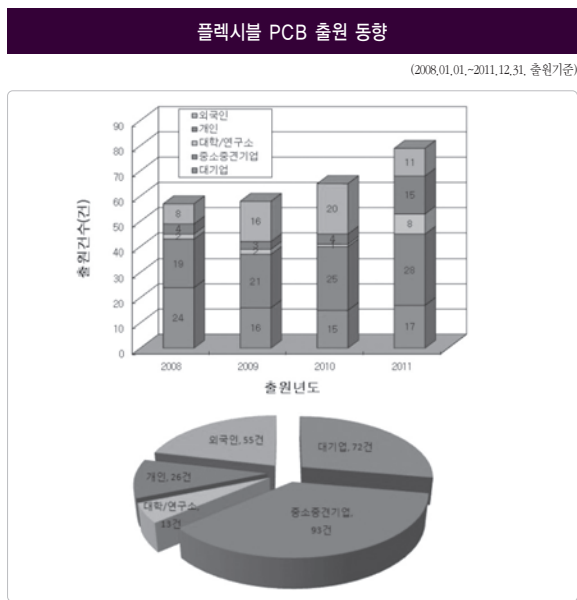
최근 4년간 특허청에 제출된 플렉시블 PCB 관련 출원은 2008년 57건, 2009년 58건, 2010년 65건, 2011년 79건이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출원 건수는 같은 기간 각각 19건, 21건, 25건, 2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보다 활발하다.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은 PCB 분야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PCB 관련 중소·중견기업도 시장을 지배하는 핵심 특허를 보유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특허청은 R&D 특허센터에서 실시하는 첨단부품·소재 산업 IP-R&D 연계전략 수립 지원 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맵 작성 지원, 특허기술 선행기술조사, 국내·외 출원비용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

# KIPO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기술유출 방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대세

특허청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지난 2010년 11월에 도입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1년 9개월 만에 129개 기업이 이용, 누적 등록건수 10,0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IT업계 등에서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등 기업의 피해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기업들이 기술 보호수단으로 원본증명서비스에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결과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해당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 즉 전자지문의 등록을 통해 영

업비밀의 보유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자사의 기술자료를 외부에 반출하지 않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 회사에서 업무용 PC로도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기업 및 개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실제, 방위산업체인 B사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특허로 등록할 수 없는 기술에 대해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술 보호에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서는 기술 이전이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한 안전장치로도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 유출 시 분쟁 해결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전·현직 근로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대기업은 물론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 납부하세요!

특허청은 지난 8월 2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여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는 신용카드는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이며,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모든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를 내려면 언제든지 「특허로」(www.patent.go.kr)에 접속하여 「수수료 납부」 메뉴에서 낼 수 있다.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납부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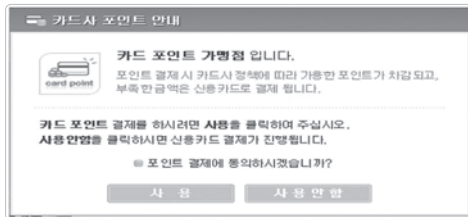
# NEWS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화면(www.patent.go.kr)

화면 예시 -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카드 안내>



화면 예시 - <신용카드 선택시 포인트 사용여부 안내>



## 우리나라 전통상품 명칭에 대한 해외 상표보호가 강화된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 막걸리, 식혜 등 우리나라 전통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최근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상표청)과 ‘공통 인정 상품목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주, 수정과, 삼계탕, 깍두기, 태권도복 등 40건을 상대국으로부터 만장일치 찬성을 받아 4개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품목록에 등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미국, 일본, 유럽 상표심사관들이 우리 전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 출원인에 대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그동안 주로 우리

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상품 명칭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할 때 발생하던 미국, 일본, 유럽 심사관들의 거절통지를 대폭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는 결국, 미·일·유럽에서 우리 기업이 제출한 상표출원서에 대한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외국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국제출원 비용절감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기대했다.

## 우리측의 ‘공통인정 상품목록’ 등재(40건) 현황 (’12.8.3일 현재)

구분	한글명칭	영문명칭
1	불고기	Sliced and seasoned barbequed beef [Bulgog]
2	파전	Green onion pancake [Pajeon]
3	고추장	Fermented hot pepper paste [Gochujang]
4	막걸리	Korean traditional rice wine [Makgeol]
5	스마트폰	Smartphones
6	MP4 플레이어	MP4 players
7	반도체 웨이퍼	Semiconductor wafers
8	셋톱박스	Set-top boxes
9	LCD 모니터	LCD monitors
10	LED 모니터	LED monitors
11	전기밥솥	Electric rice cookers
12	태권도복	Taekwondo suits
13	삼겹살	Grilled pork belly [Samgyeopsal]
14	설렁탕	Ox bone based broth [Seolleongtang]
15	육개장	Spicy beef broth [Yukgaejang]
16	젓갈	Salted and fermented seafood [Jeotgal]
17	김치찌개	Cooked dish consisting primarily of fermented vegetable, pork and tofu [Kimchi-jjigae]
18	청국장찌개	Cooked dish consisting primarily of rich soybean paste and tofu [Cheonggukjang-jjigae]
19	된장찌개	Cooked dish consisting primarily of soybean paste and tofu [Doenjang-jjigae]
20	삼계탕	Cooked dish consisting primarily of chicken and ginseng [Samgyetang]
21	닭갈비	Cooked dish consisting primarily of stir-fried chicken and fermented hot pepper paste [Dak-galbi]
22	약식	Sweet rice with nuts and jujubes [Yaksik]
23	매실차	Asian apricot tea [Maesilcha]
24	김밥	Korean-style dried seaweed rolls containing cooked rice [Gimbap]
25	수제비	Cooked dish consisting primarily of dough flakes with broth [Sujebi]
26	떡국	Cooked dish consisting primarily of sliced oval rice cakes with broth [Teokguk]
27	떡볶이	Cooked dish consisting primarily of stir-fried rice cake with fermented hot pepper paste [Tteokbokki]
28	비빔밥	Cooked rice mixed with vegetables and beef [Bibimbap]
29	인절미	Glutinous pounded rice cake coated with bean powder [Injeolmi]
30	깍두기	Radish cubed kimchi [Kkakdugi]
31	수정과	Non-alcoholic cinnamon punch with dried persimmon [Sujeonggwa]
32	송편	Half-moon-shaped cake of rice containing sweet or semi-sweet fillings [Songpyeon]
33	만두	Korean-style dumplings [Mandul]
34	김치전	Kimchi pancakes [Kimchijeon]
35	빈대떡	Mung bean pancakes [Bindaetdeok]
36	식혜	Non-alcoholic rice punch [Sikhye]
37	소주	Korean distilled spirits [Soju]
38	인삼주	Ginseng liquor
39	인터넷 방송업	Internet broadcasting services
40	태권도 지도업	Taekwondo instruction

# KIPO

## 2012년 '자동차 연비향상 기술 경진 대회' 개최

특허청은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안전연구원 공동으로 2012년 「자동차 연비향상 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속적인 연료비 상승과 전 세계적인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연비향상 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범 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에 최초 개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금년 대회는 예년과 동일하게 한국자동차공학회의 2012년 정기 학술대회와 함께 진행되며, 지난 8월 14일부터 동학회 홈페이지(www.ksae.org)의 논문 접수시스템을 이용하여 응모할 수 있다.

참가 대상자는 자동차 기술 관련 산업체 연구원뿐만 아니라 대학생, 대학원생 등이 해당되며, 응모분야는 엔진효율 향상, 동력전달시스템 개량, 차체 경량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자동차 연비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분야가 가능하다.

응모된 기술 논문은 1차, 2차에 걸쳐 학술성과 특허성에 대한 평가를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포상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대학, 공공 연구소 연구원들도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몫을 이들에 할당할 방침이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상, 한국자동차공학회장상, 자동차안전연구원장상이 수여되며(각 상장 및 상금 80~300만원), 기술 논문 내용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KINTEX(고양시)에서 개최되는 한국자동차공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이번 대회는 자동차 연비향상 기술 논문의 지식재산 권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녹색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특허청 최고 정보화 달인에 이동재씨

특허청은 2012년 특허청 정보지식인대회에서 국제출원과 이동재(35·남·6급)씨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정보지식인대회는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대회는 각 부서별 대표주자 8명이 참가하여 최신 IT 트렌드, OA처리 능력, 정보화 상식 등 정보화 종합지식에 대하여 개인과 부서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쟁을 벌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동재씨 외에 우수상에 김갑병(전기심사과) 서기관, 고상호(디스플레이심사팀) 사무관, 최옥현(연수원 교수과) 주무관, 장려상에는 성상훈(특허심사협력과) 주무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허청 변훈석 정보기획국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직원들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화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7명에게는 특허청장 표창이 수여되고, 상위 4명은 오는 9월 중앙대회에 특허청 대표로 참가한다. 특허청은 2011년 전국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서 정보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수상자 명단			
최우수	우수	우수	우수
			
이동재 주무관 (국제출원과)	김갑병 서기관 (전기심사과)	고상호 사무관 (디스플레이심사팀)	최옥현 주무관 (연수원 교수과)

제공 특허청

# 독자마당

발명특허를 보신 후 가장 좋았던 내용과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적어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더 나은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면에 게재되신 분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독자의견을 적어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 보내실 곳  
smp@kipa.org

## QUIZ

1. 각국의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놓고 이를 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해 통화 간 교환비율을 금을 통해 고정한 제도입니다. 1800년대 주요 국가들이 채택했으나 각국에서 야기된 높은 인플레이션과 세계 대공황 등으로 1930년대 결국 붕괴된 이 방식은 무엇일까요?
2. 조직 내 부정부패를 외부에 드러내는 '내부고발자'를 가리키는 말로 조직의 비리에 눈 감지 않고 경고의 호루라기를 분다는 뜻에서 생긴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3. 부산 남포동에서는 XX호떡이 유명합니다. '1박 2일'에서 이승기가 먹은 것으로도 유명하지요. 이 호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맥으로 보내드립니다.

### 독자의견

- ▶ **최민희 독자** \_ 청소년 발명페스티벌을 읽고 많은 아이들이 발명을 통해 수상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도 뛰어난 창의력을 가지고 발명 대회에 나가 수상하면 좋겠네요. 다양한 발명대회에 대한 소개 기사도 실어주세요.
- ▶ **김준옥 독자** \_ 기계공학 전공자로서 '최근 공조 및 냉동 기계분야 특허기술 동향' 기사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기계공학 관련 기술이 다양한데 그 중, 건설 플랜트 관련 특허 동향 리포트도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 ▶ **김지영 독자** \_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을 보면서 지식재산, 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계는 지금'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특허 분쟁이야기를 재밌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 8월호 퀴즈 정답

1. **웬록, 맨드빌**
2. **몬트리올 올림픽 복싱부문 금메달 양정모**
3. **거문도**

### 퀴즈 정답자

- 최민희**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 김준옥**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 김지영**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 KIPA



## 국제 특허분쟁, 전방위 지재권 외교로 예방한다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김호원 특허청장과 함께 지난 8월 1일부터 2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하여, 데이비드 카포스(David J. Kappos) 미국 지식재산차관 겸 특허청장, 그리고 랜달 레이더(Randall R. Rader) 연방순회합소법원(CAFC) 법원장과 연쇄회동을 갖고, 양국 간 특허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김 청장은 미국 특허당국의 양대 수장인 카포스 청장 및 레이더 법원장과 회담을 통해, 최근 스마트폰 시장을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는 지재권 분쟁을 배경으로 제기되고 있는 특허비실시 수익기업\*(NPE) 등에 의한 특허권 남용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우려와, 미 지재권 제도에 대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특허권 분쟁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특허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업을 일컫는 말로 특허괴물(Patent Troll)로도 불림

양 청장은 한-미 FTA를 통한 교역증가를 위해서는 특허분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간 지재권분야 MOU를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심사공조, 교육자원의 공동활용, 전문가 양성 등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지난 8월 9일, 한미 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올해 2회째 개최되는 UKC 행사에 참석하여 IP를 주제로 우리회 사업활동 등을 소개하였다.

그 밖에도 조 부회장은 지난 8월 10일까지 한미과학협력센터 업무협약, 중소기업 KBC 소장(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미팅, ROPES & GRAY 로펌 업무협약, 미주한인발명진흥회장단 미팅, 한미 IP포럼 회장 및 발명유관단체 인사 간담회 등 발명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하였다.



##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2012년 올 여름을 강타할 마성의 매력남들이 몰려온다.  
블록버스터 코믹 쟁탈극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장유정 작.연출/ 장소영 작곡)는 잠시도 눈을 땔 수 없는 탄탄한 스토리 전개와 코믹한 웃음과 감동으로 2008년 언론과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작품이다.

경북 안동을 배경으로 세련된 무대세트에서 운율이 맞아 떨어지는 다양한 장르의 신나는 노래와 배우들의 열연을 통해 지루함 없이 해학과 감동을 전달한다.

2008년 언론사 선정 뮤지컬 TOP 10 1위!

2008 대한민국 국회대상 뮤지컬부문 수상!

제2회 The Musical Awards 베스트뮤지컬 수상!

제3회 The Musical Awards 극본상, 작사, 작곡상 수상!

### 줄거리

서로 못잡아 먹어 안달 난 원수보다 더한 형제 이석봉, 이주봉.

아버지의 부고를 받고 고향집 안동으로 내려온다.

부자간의 연을 끊고 지내온 언3년, 다짜고짜 다투기 시작하는데...

때마침 한밤 중 찾아 든 미모의 여인 오로라.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오로라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무언가를 남기셨다는 말을 전한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은 형제와 끊임없이 부딪친다

“에라이, 썩을 놈 석봉이! 죽일 놈 주봉이!”

아버지가 남기신 무언가도 찾고 오로라도 차지해 새로운 삶을 살겠다며 꿈에 부풀 형제. 과연 생각대로 될까?



공연장소  
\_ 코엑스아티움 현대아트홀

공연기간  
\_ 2012. 06. 26 ~ 2012. 10. 01

관람시간  
\_ 140분

기획사  
\_ PMC프러덕션

# 골래 발명 이야기 \_ 텔레비전 리모콘

글·그림 김민재



모래없는 사막을 상상할수 없고  
 팔이 없는 붕어빵을 상상할수 없듯이  
 이것 역시 오늘날 그러한데 ...

그게  
 뭘까?

완전  
 궁금!

그것은 바로 TV와 리모콘이다

빨리 따라와라~

네~

잘잘잘

사실 오늘날과 같은 리모콘의 등장은 그리 긴 역사를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 에게 있어 리모콘의 의미는 상당하다.

아~ 이놈의 리모콘은  
 도대체 어디로 간거야?!

아. 빨리 죽구  
 봐야 하는데!!  
 나타나기만 해봐~!!  
 건전지를 확 뽑아버린다 아주!!

사실 사람들은 리모콘이 없는 상황에서선 리모콘의 대리 역할을 하는 어떤 것(?)  
 을 통해 그 편리함을 누리곤 했다.

6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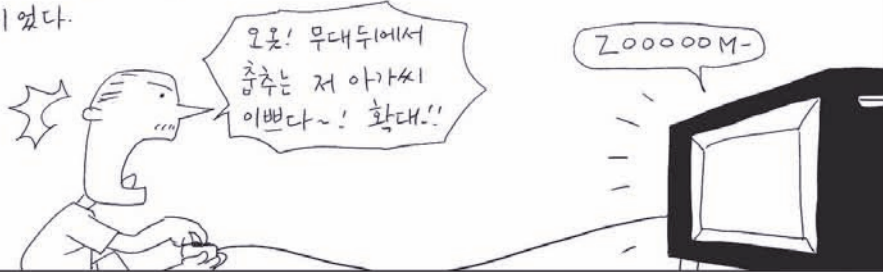
7번!

11번!

네!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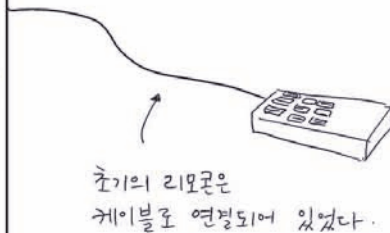
초기 텔레비전의 등장에는 당연히 리모콘의 개념이 없었다.  
1948년에 등장한 '텔레뷰'의 경우 리모콘 형태를 갖춘 기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었고 화면의 이미지를 확대해주는 기능만 할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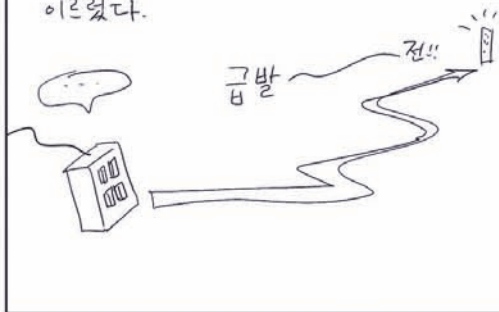
이후 현대인들의 편리한 삶에 대한 욕구는 점차 텔레비전의 개선에까지 이르렀다.



이런한 시기에 당시 '제니스라디오' (현재 제니스전자)는 TV 채널을 멀리서 조종할수 있는 리모콘 개발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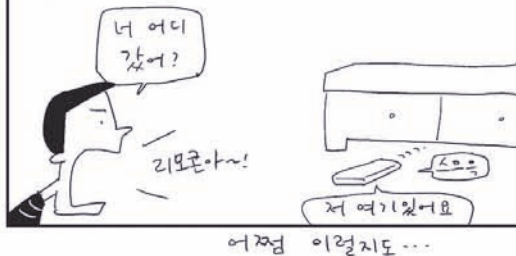


리모콘의 발전은 계속되었다.  
소리를 키우거나 줄이고, 채널을 바꾸고, 급기야. 초음파를 통해 작동하기 까지 이르렀다.



이렇듯 현대인의 편리함에 대한 갈급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리모콘은 오늘날의 형태까지 빠르게 발전하였다.

자. 그럼 리모콘의 변신은 앞으로 얼마나 더 이루어질까?!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 # Jeju 제주도



#### 제주돼지고기

우수한 종돈통일, 사료통일, 철저한 사양관리통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맛을 관리하여 육질이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하여 맛이 담백하고 고소하다. 또한, 내륙지방 고기보다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 콜레스테롤 걱정이 없다.



| 상표명 |  
제주돼지고기

| 권리자 |  
사단법인 제주도수출육가공협의회

| 등록번호 |  
제22호

| 상품분류 |  
제29류 돼지고기

#### 연락처

사단법인 제주도수출육가공협의회  
064-794-6105



제주도

#### 1/ 유래

제주 돼지는 3세기 고려시대에 원나라에서 말, 소 등 다른 가축과 함께 제주도에 도입되면서 사육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제주 재래돼지는 '흑돼지'로 무게 20~50kg 정도로 작으며 농가에서 퇴비생산과 경조사에 손님 접대용으로 사육되었다.

1960년 성 이시돌 목장에 외국산 개량돼지가 수입되면서 하안색의 돼지를 처음으로 제주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집단사육이 시초가 되었다.

#### 2/ 특성

제주도는 무공해 청정지역으로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초원을 상징하는 제주만의 축산물 안정생산 관리체계(HACCP-FCG)를 구축하였고,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 의한 방역결과 돼지콜레라와 오제스키병 발생이 없는 청정 지역임이 국제적으로 입증되었다.

# # Eumseong 충청북도



## 음성고추

음성고추는 북방계통이라 색상이 진하고 첫맛은 단맛이 굉장히 진하며 차차 매운맛이 강해지는 충북음성 고유의 특산물이다.



# 음성고추

| 상표명 |  
음성고추

| 권리자 |  
음성고추 영농조합법인

| 등록번호 |  
제36호

| 상품분류 |  
제29류 건고추

**연락처**  
음성고추 영농조합법인  
043-871-3394



### 1/ 유래

18세기 택리지에서는 ‘그 유명한 음성고추’를 소재목으로 기술하였으며, 조선전기 문신학자였던 서거정이 쓴 ‘백로검수정’에서 음성의 특징을 음양의 조화에 비유하여 ‘맵기도 하지만 단맛이 나는 음성고추 같은 땅과 사람들’이라 하는 등 음성고추의 지리적 우수성은 옛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2/ 특성

음성지역은 소백산맥과 차령산맥이 지나고 있어 바람의 피해가 적어 자연재해에 따른 품질 저하가 적고 고품질의 고추 생산이 가능한데 고추 맛이 좋기로 입증된 지역으로서 일조량이 적당하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기 때문에 특별한 맛이 있다.

일조량이 과다하면 단삼보다는 매운맛이 강해지며 일조량이 부족하면 매운맛이 약하고 싱거운 맛이 난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추의 생리작용이 활발해져서 영양분을 몸속에 많이 축적하게 된다. 같은 품종을 음성지역에 심었을 때와 다른 지역에 심었을 때 고추껍질의 두께가 달라지는 이유이다.



# 스트레스 다스려야 장수한다

□ 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정도에 차이가 있  
T 을 뿐 누구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최근 한 조사에 따  
르면 한국 직장인들이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 비중은 8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출근만 하면 우울해진다  
는 직장인이 무려 74%로 나타나 직장 내 스트레스가 사회 문  
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친 스  
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다 보  
면 비만, 탈모, 협심증, 고혈압, 위궤양과 같은 질환에서부터  
심한 경우 돌연사에 이를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내적으로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외부  
로부터 오는 압력을 말한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정도로 삶의 과정에서 나타  
나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감정을 기쁨(喜), 분노(怒), 근심  
(憂), 생각(思), 슬픔(悲), 두려움(恐), 놀람(驚)의 7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각기 감정들은 오장육부와 연  
결되어 어떤 감정이 너무 지나치면 기혈순환이 제대

김소형  
한의학 박사



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장육부 곳곳에 병이 난다고 보고 있다. 오늘날의 스트레스는 한의학에서 칠정상(七情傷)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한의학에서는 간을 노상간(怒傷肝)이라 하는데, 말 그대로 화를 내면 간이 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흔히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이 가빠지고 혈압이 오르면서 뻐뻐해지는 증상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상처 입은 간이 기혈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화로 인해 뜨거워진 간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 얼굴이 벌겍게 달아오르고 눈이 충혈되며, 두통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

다. 일반적으로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일에 능률도 오르지 않으며, 목덜미가 빠근해지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게 되어 자연스레 체력이 약해지게 된다. 또 얼굴에는 기미나 뾰루지 등 각종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의 기가 울체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몸 속에 독소나 노폐물이 쌓이면서 결국, 각 장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궁질환에 시달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으로 예민하다 보니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생리통, 생리불순, 냉증 등과 같은 신체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여성건강의 바로미터인 자궁은 매우 섬세하고 예민한 장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균형을 잃게 된다. 이처럼 자궁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어혈이라는 비생리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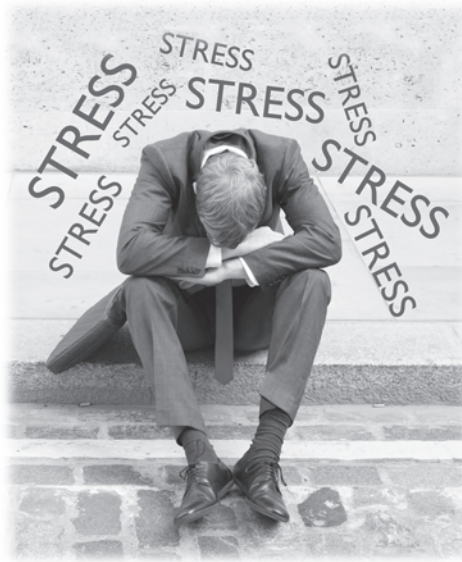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 각종 자궁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의원에 내원하는 비만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검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비만 환자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흉부 쪽에 한방에서 화(火)라고 말하는 스트레스가 가득 묻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스트레스가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방해해 지방이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체중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 스트레스로부터 건강 지키는 법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 몸이 피로해지면서 목덜미가 빠근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부신피질 호르몬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몸은 각종 스트레스에 의한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부신에서 호르몬을 분비하여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호르몬 분비 능력이 저하되는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부신 피질 호르몬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이 호르몬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비타민 C와 우리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품으로는 감자, 사과, 미나리, 매실, 미역, 김, 다시마 등이 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술로 푸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화가 좀 누그러지는 것 같지만 알코올은 혈행을 방해하고 숙취

를 남겨 오히려 몸을 무겁게 한다. 따라서 화김에 술을 마시기 보다 피로를 없애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한방차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같은 한방에서 칩뿌리를 말하는데, 몸에 뭉친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뛰어나 스트레스로 인한 화를 풀어준다. 또한 스트레스로 얼굴이 쉽게 달아오르거나 어깨 근육이 뭉쳤을 때에도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또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으로 고생한다면 국화차를, 불면증과 신경쇠약 그리고 가슴 두근거림이 있다면 오미자차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해서 어깨가 뻣뻣해지는데 이런 증세를 경근통이라고 한다. 또 조금만 신경 써도 뒷목이 뻣뻣해진다면 마사지를 통해 뒷목의 뭉친 근육을 자주 풀어주는 것이 좋다. 제때 풀어주지 못하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조금 아프지만 계속 마사지해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진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아문혈과 견정혈을 지압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머리 뒷부분의 목뼈 중심에 속 들어간 부분인 아문혈에 양쪽 엄지손가락을 대고 귀 부분까지 둥글게 올라가며 3초 정도 지그시 눌렀다 손을 떼어 준다. 이렇게 6~7분 정도 지압해주면 두통과 눈의 피로가 풀린다. 또 한쪽 손으로 반대쪽 어깨를 가볍게 감싸듯이 잡았을 때 중지가 닿는 부분이 견정혈인데, 이 부위를 지긋이 눌러주면 어깨와 목의 통증이 완화되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는 좋은 식습관과 운동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대처하는 요령이 중요하다. 취미나 명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그때그때 풀어버리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이 아닐까 한다. 2012. 9 |



"아이디어가 선풍타격이  
되어 드립니다."



기업과 종업원의 win-win.

# 직무발명제도

기업의 미래를 바꿉니다.

## ▶ 직무발명제도란?

-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 기업은 직무발명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나요?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유발하고, 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와 기술 축적 및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 ▶ 직무발명제도는 어떻게 도입 하나요?

-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을 기업과 종업원이 합의 하여 기업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정하면 됩니다.

##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직무발명 도입기업에 대하여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찾아가는 직무발명 제도 교육」을 무료로 개최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직무발명제도 열람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http://www.kipo.go.kr))의 특허마당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http://www.kipa.org))의 사업안내

## ■ 직무발명제도 관련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37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5

#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 제한없음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E-mail) : smp@kipa.org

## 회원 동정 접수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 실을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 A4(1/2매, 글자크기 :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 smp@kipa.org



##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기획팀 TEL (02)3459-2727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확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 우리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성용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전북지부	-	정승원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1	063-471-1284

편집 : 기획팀 박선민 주임 (Tel. 02-3459-2727, Fax. 02-3459-2729)

# 제 10회 발명장학생 선발 안내

접수기간 2012년 8월 22일(수) ▶ 9월 19일(수)

## 목적

우수 발명활동 학생에 대한 선발을 통해 지속적 발명활동 동기 부여 및 바람직한 발명인재상 정립

## 선발대상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고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연령(만10~18세)에 해당하는 자

\* 초등학생은 신청일 기준 4~6학년 재학생만 신청 가능

## 선발절차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관찰수행평가(선발캠프, 2박3일)

## 선발혜택

선발증서 및 메달, 해외 단기 연수, 발명장학생 특별 교육과정 참여, 사회배려계층 금전적 지원

##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02-3459-2755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www.kipa.org](http://www.kipa.org))

주최·주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2nd

직무발명 역량을 갖춘 예비 기술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참여 안내

# IP-Meister Program

**신청기간** 2012. 8. 20(월) ~ 9. 21(금), 신청마감일 소인분 까지

**참가자격**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재학생으로 동일 학교 소속의 2~3명 이내로 구성된 팀.  
(1인으로 구성된 팀은 신청 불가, 지도교원 1인 반드시 참여)

**신청방법** 제안서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주소 : 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창의인재육성팀 마이스터고 담당자 앞  
이메일 : ipmp@kipa.org

**공모과제** 자유과제(기술개선, 용도변경, 디자인개선)  
현장연계과제(기술개선, 용도변경, 디자인개선) - 현장연계과제는 가점 부여

**결과발표** 2012. 10. 19(금), 선정팀 학교공문 발송 및 온라인 공지 (www.kipa.org)

**특 전**

-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인증서(수료증) 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선정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지원
- 예비기술자 직무발명 경진대회 참여
- 직무발명경진대회 최우수팀 2팀(학생, 지도교사) 상장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선진기업 국외연수 실시  
(최우수팀 상격은 변경될 수 있음)

**세부사항**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www.kipa.org

**주 최**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주 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 02-3459-2753/2957)

## IP-Meister Program 이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국내기업이 판매중인 제품에 관련된 기술개선, 용도변경, 디자인 개선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변리전문가, 기술전문가 멘토와 함께 학생 아이디어가 제품화, 사업화 가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